

발 간 등 루 번 호
11-1543000-000702-01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김은설 이정원 박진아 조혜주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2014



농림축산식품부

발 간 등 루 번 호
11-1543000-000702-01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2014



농림축산식품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축
산식품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선행연구	12
II. 국내외 농촌 보육 사업 현황	14
1. 농촌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실태	14
2. 농촌 영유아 양육 지원 제도	17
3. 외국의 특징적 농촌 보육 사업	20
III. 농촌 영유아 돌봄 사업 현황 및 수요 분석	29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9
2. 이동식 놀이교실	45
3.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 사업	54
IV.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 시설 운영 모델 개선	69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69
2. 이동식 놀이교실	78
3.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 사업	83
V. 농촌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86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적용	86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 맞춤형 아이돌보미 양성	94
3. 농촌으로 들어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100
4. 농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105
참고문헌	108
부 록	111
부록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112
부록2.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116
부록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표	120
부록4.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명단	121

표 차 례

〈표 I-3-1〉 집단 면접 일정 및 참석자	5
〈표 I-3-2〉 사례 조사 대상 및 일시	6
〈표 I-3-3〉 어린이집 설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읍·면	8
〈표 I-3-4〉 운영 실태 전화 조사 참여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10
〈표 I-3-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실태 조사 내용	10
〈표 I-3-6〉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운영실태 조사	11
〈표 I-3-7〉 자문회의 참석자	12
〈표 II-1-1〉 농촌지역 어린이집 및 아동정원 현황	15
〈표 II-1-2〉 전국 대비 농어촌의 어린이집 유형별 점유율	15
〈표 II-1-3〉 여성농업인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	16
〈표 II-1-4〉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현황	17
〈표 II-2-1〉 농어촌 양육수당 단가	18
〈표 II-2-2〉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 단가	18
〈표 II-2-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원 단가	19
〈표 III-1-1〉 농촌아이돌봄센터(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현황	32
〈표 III-1-2〉 연도별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현황	33
〈표 III-1-3〉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환경 실태	34
〈표 III-1-4〉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실태	35
〈표 III-1-5〉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 및 차량운행, 기타 인력 실태	37
〈표 III-1-6〉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38
〈표 III-1-7〉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상 어려움	40
〈표 III-1-8〉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만족도	41
〈표 III-1-9〉 소규모 어린이집 재정 지원 강화 필요 요목	42
〈표 III-1-10〉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수요 조사 결과	43
〈표 III-2-1〉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 운영 결과	46
〈표 III-2-2〉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내용(2013) ..	48
〈표 III-2-3〉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1(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	50
〈표 III-2-4〉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 2(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보육 공무원 대상) ..	51

〈표 III-2-5〉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 3(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53
〈표 III-3-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안)	56
〈표 III-3-2〉 운영주체별 유형	57
〈표 III-3-3〉 운영모델별 유형	57
〈표 III-3-4〉 주말돌봄방 시설장 및 돌보미 현황	58
〈표 III-3-5〉 주말돌봄방 기타직원	59
〈표 III-3-6〉 주말돌봄방 아동 현황 및 이용가구 특성	60
〈표 III-3-7〉 주말돌봄방 운영형태	61
〈표 III-3-8〉 이용 건물 형태 및 이용시간 연장 요구 여부	61
〈표 III-3-9〉 운영지원(복수응답)	62
〈표 III-3-10〉 현재 전반적 운영상 어려움 및 내용	63
〈표 III-3-11〉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 및 개선 의견	63
〈표 III-3-12〉 주말돌봄방 향후 전망 및 사업지속 여부	65
〈표 III-3-13〉 휴일 보육 어린이집 현황	67
〈표 V-1-1〉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표준서비스 내용	87
〈표 V-1-2〉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기준	88
〈표 V-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액 추이	89
〈표 V-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역별 이용 현황(2013)	90
〈표 V-2-1〉 아이돌봄 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	95
〈표 V-2-2〉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아동 1인 돌봄서비스 기준)	97
〈표 V-3-1〉 20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수행 시도 및 기관(2014년 7월 기준)	101
〈표 V-3-2〉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내용	102

그 립 차 례

[그림 I-3-1]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수요 조사 절차	8
[그림 I-3-2] 행정지도 상 어린이집 미설치/인구/거리 확인 후 수요조사 지역 선정의 예	9
[그림 II-3-1] 뉴질랜드 REAP 분포	25
[그림 III-1-1] 시도별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수(20인 초과 시설 포함)	33
[그림 III-3-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체계	55
[그림 IV-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다양한 유형	74
[그림 V-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13년)	91
[그림 V-2-1] 아이돌봄 사업 개요	95
[그림 V-2-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유형('2014년)	98
[그림 V-2-3] 아이돌봄서비스 연도별 신규 서비스 이용 가구 수(2008-2013)	98
[그림 V-3-1]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개요	100
[그림 V-3-2] 공동육아나눔터 연간 참여 인원 현황	103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인구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1970년대 44.7%, 1980년대 28.4% 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8.6%, 그리고 2013년은 농업인구 2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농민신문 2014년 7월 16일자).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현대사회의 농업 기계화와 생산효율성의 상승 및 주민의 이농향도(離農向都)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줄어드는 그 비율의 급격함은 현시점에서의 인력난과 장래 농촌의 존폐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근년 들어 농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점차 가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귀농현상은 농촌 인구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게 만들고 있다. 최근 귀농가구 수는 2010년 5,405호였으나 2012년은 2배가 넘는 11,220호였고 2013년은 10,923호를 기록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4). 이와 함께 농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노력으로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상위 10위권 지역에서 농촌이 9개를 차지하고 도시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었다(국가통계포털, 2014; 연합뉴스 2012.9.20자). 농촌의 전체적인 인구 수 감소와는 별도로 농촌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은 농촌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언론 기사는 농촌 출생 수의 감소가 농촌의 육아·보육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출생 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뉴시스뉴스, 2014년 7월 14일자 보도). 즉, 농촌의 출생 수를 높이고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농촌에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육아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 인프라 등 양육 지원 제도가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농촌 가구의 출산율은 점차 더욱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젊은 층의 농촌 거주에 걸림돌을 제공할 것이고 농촌 인구는 회복의 여지가 없어진다. 농촌에서 아이를 낳고 기

를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보장이 향후 농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은 농촌이 아이를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중설, 교사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 수 분포가 적은 농촌에 대한 특수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 분야 중 특히 보육인프라 중설과 보육의 질 제고와 관련한 지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2009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농어촌이 가진 적은 수요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인근 시설 이용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2013년부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으로 변경되어 농촌에 특화된 돌봄 보육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보다 ‘농촌’ 사회가 가진 특성에 더욱 세심히 대응하고 농촌의 요구와 특징에 더 민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가장 적합한 농어촌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정부의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촌의 보육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이용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도시와는 달리 수요가 많지 않고 한편으로는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아 존재하는 수요에 적합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은설 외, 2007).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등 일부 농촌에서는 적지만 꾸준하고 시간 집중적인 보육 수요가 있으나, 지역 특성상 민간 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렵고 상대적 인구 밀집 지역만을 중심으로 국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지역 면적에 비해 시설 분포가 균등하지 못함으로써 어린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육실태조사(2009)에 의하면,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차량 중 27.4%가 월 3,000km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대도시의 경우는 14.8%를 나타내 농촌이 2배 가까이 차량 운행 구간이 길고 아동들이 차량을 오래 타야 하는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보육통계를 보면, 도시지역 어린이집의 50%가량을 점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농어촌지역에는 16%에 그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의 주 서비스 대상인

영아 보육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b).

그러나 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농촌 중에서도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수요도 많지 않아 국공립 시설 신설이 힘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가 적어 유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설치 수요가 적고 운영 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최근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문제 진단과 향후 사업 전망을 위한 대한 실제적·구체적 수요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지자체는 소유한 부지, 건물이 있어야 하고 설치비용지원도 일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운영 규모가 작고 장래성이 불투명하여 위탁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설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설 외, 2010).

본 연구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함으로써 운영모델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와 더불어,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이나 ‘농번기 주말 돌봄방’ 등 농촌의 특수성을 살린 사업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보육 서비스 사업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 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제안하는 것 또한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둔다.

2. 연구내용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농촌 보육 사업 현황 검토

농촌 지역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외국의 농촌 보육서비스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그들이 우리 농촌 보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농촌 면적이

넓어 농민 가구 대상 보육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나. 농촌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수요 파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업 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 사업의 추진 현황과 구체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농촌 보육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농촌 보육서비스 운영모델 개선안 제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 영유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물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라. 농촌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보육 지원 사업 외에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외의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다양한 보육 또는 양육 지원 사업이 농촌에서 추진될 때 필요한 요건과 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 분석, 관련자 집단 면접 실시, 수요 파악을 위한 전화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다.

가. 문헌자료 분석

농어촌 영유아 양육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 선행연구, 정부 사업 관련 안내 책자, 문서, 관련 법률 등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적 지역 선정을 위해서도 관련 통계,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지도 등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외 사례 조사와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문헌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원자료에 대한 번역작업을 거쳐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집단 면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실제 현장 수행자인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자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의 면접을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중 지역별 선정을 통해 3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일정과 참석자는 다음 <표 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3-1> 집단 면접 일정 및 참석자

구분	참석자		실시 일시
	시설 운영자	담당 공무원 및 기타	
제1차	-문경 동로어린이집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2014. 5
	-상주 화복어린이집		
	-안동 녹전어린이집	-안동시청 농정과	
	-예천 군립용문어린이집	-예천군청 농정과	
	-경주 산내어린이집	-경주시청 농정과	
	-함양 안의어린이집 서상분원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함양군청 농축산과	
제2차	영천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2014. 5
	임고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영천시청 농축산과	
제3차	의성군 춘산어린이집	-의성군청 노인여성복지과 -의성군청 농정과	2014. 6
	-진도 조도어린이집 -영암 금정어린이집	-전남도청 농업정책과	

다. 사례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를 지원한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관찰과 원장 및 관련자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운영자의 요구 사항, 공무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또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사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운영 방식과 현 상황, 놀이장난감 보관실, 소독장치 등을 관찰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관련자와 담당공무원, 이동식 놀이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2인을 면담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I-3-2〉 사례 조사 대상 및 일시

사업명	지역	방문 시설명	면담자	실시 일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소규모 어린이집)	충남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공주시청 보육담당자 -충남도청 농정과 공무원	2014. 4
	충북 괴산군	송면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충북도청 농업정책과 -괴산군청 유기농산업과	2014. 5
이동식 놀이버스	전남	전남육아종합 지원센터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동식놀이버스 이용 부모2인 -전남도청 여성가족과	2014. 6

라. 수요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의 수요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화를 이용한 담당 공무원 및 업무자 통화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해당 관청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고 전화통화 시기는 2014년 7월 9월부터 16일 사이 약 일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본 연구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수요 조사는 [그림 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집 선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은 본 연구에 주어진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전국 모든 군과 면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근거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제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28개 군의 36개 면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수요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표집 방법 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적 표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서는 농촌지원업무 담당이 아닌 복지·보육 전달체계 상에 있는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도청보다는 주민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초자치체의 영유아 보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 절차를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441개 읍·면 명단을 보육통계로부터 확보하고, 그 중 영유아 인구수와 지리적 여건 즉,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는 면이 연이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총 36개 면지역을 선정하였다. 수요 조사 대상은 이 면이 속한 군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이다. 조사 대상 지역 선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441개 명단을 확보하였다. 시·도별 구성 현황을 보면 [부록 4]과 같다.

둘째, 미설치 읍·면 중 가장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는 2, 3, 4 세 영유아 아동 인구 총 수가 20여명 이상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할 만한 면 지역 262개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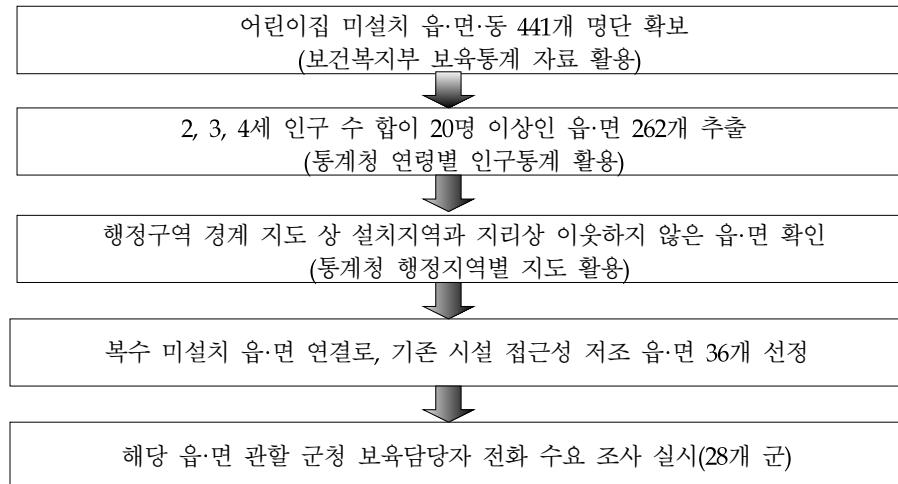
셋째, 추출·선택된 읍·면이 속한 군 전체의 행정경계 지도를 통계청 사이트로부터 확보하여 해당 읍·면이 인근 중심 읍 또는 어린이집 설치 면과 지리상으로 근접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지역에서도 이웃 면의 어린이집까지 차량으로 등·하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거주 면에 소규모 어린이집이 설치된다하더라도 보다 규모가 큰 기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인근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는 미설치 읍·면은 대부분의 경우 제외되었다.

넷째, 읍이나 어린이집 설치 면과 인접해있지 않은 미설치 면이 2개 이상 연결되어 있어 기존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 것으로 판단되는 면을 수요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27개 군 36개 면이 선정 되었다. 최종 표집된 면은 다음의 <표 I-3-3>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해당 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여부,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등이었으며, 추가적으로 이동식 놀이교실이나 주말돌봄방 사업의 필요성을 물은 지역도 있었다.

〈표 Ⅰ-3-3〉 어린이집 설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읍·면

시·도	군(읍·면)	군 수	면 수
인천광역시	옹진군(덕적면)	1	1
강원도	영월군(김삿갓면, 상동읍)	1	2
충청북도	옥천군(정성면), 영동군(양산면)	2	2
충청남도	청양군(장평면), 홍성군(서부면), 예산군(광시면)	3	3
전라북도	익산시(망성면), 정읍시(산내면), 김제시(공덕면), 진안군(주천면, 동향면), 장수군(계북면), 임실군(신덕면, 강진면, 덕치면), 고창군(심원면)	7	10
전라남도	고흥군(남양면), 보성군(겸백면), 화순군(청풍면), 강진군(마량면), 해남군(계곡면, 북일면, 현산면), 장성군(삼서면), 신안군(자은면)	7	9
경상북도	김천시(부항면), 의성군(단밀면, 구천면), 봉화군(소천면)	3	4
경상남도	통영시(육지면, 한산면), 의령군(지정면), 창녕군(이방면), 고성군(영오면)	3	5
계		27	36



[그림 Ⅰ-3-1]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수요 조사 절차



주) 지도에서 음영표시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며 이들 면의 영유아 인구수를 확인한 후 지도상 음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된 면과 지리상 근접해 있지 않은 2개 면(그림에서 의성군 단 밀면, 구천면)을 선택함.

[그림 Ⅰ-3-2] 행정지도 상 어린이집 미설치/인구/거리 확인 후 수요조사 지역 선정의 예

2) 이동식 놀이교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는 농촌 지역이 포함된 전국 9개 도청 보육사업 담당자와 해당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센터이다.

3) 농번기 주말돌봄방

2014년 현재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 지속 희망 여부를 문의하여 수요를 살펴보았고 지자체의 사업 주무 부서인 농정과 담당자와 보건복지관련 부서의 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 수요와 의견을 수합하였다.

마. 운영 실태 조사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014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운영의 특성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화로 읽어주고 조사를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화조사는 2014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전체 20개소 중 1개소는 이메일, 다른 1개소는 팩스로 응답을 송부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표 I-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3-4> 운영 실태 전화 조사 참여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도	시군구	시설명
인천	강화군	삼산	경북	안동시	서부
강원	화천군	봉오다솜		의성군	춘산
충북	괴산군	송면		상주시	화북
전남	공주시	사곡		영천군	임고
	진도군	조도		예천군	용문
	여수시	남면		봉화군	명호
	순천시	상사		봉화군	물야
	완도군	넙도		예천시	하리
	곡성군	신들		문경시	동로
	영암군	금정		함양군	서상
	계				20개소

조사내용은 교직원 현황, 영유아현황, 차량운행, 시설 현황, 운영시간, 개선의견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3-5>에 제시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3-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실태 조사 내용

영역	문항 구분	세부 내용
교직원 현황	원장	겸임여부, 연령, 학력, 경력
	교사	연령, 학력, 경력, 거주지
	직원	취사부 유무, 운전원 유무, 인건비 지원 여부, 기타직원 유무
영유아 현황	인원	정원, 현원
	반 구성	반구성 연령, 반별 아동 수

영역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시설 현황	건물 형태	단독/일부, 사용 층수, 신축/리모델링
	공간 구성	보육실 수, 사무실 구비 여부, 화장실 수 등
	놀이터 유형	실내/실외/인근 등
운영 현황	운영 시간	운영 요일, 운영시간, 연장/휴일보육
	차량	운행여부, 소유형태, 운전자, 동승자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개선 의견	운영 관련	운영의 어려움, 재정지원요구분야, 요구 사항
	지원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항목 만족도
	농촌보육전반	의견 제시

2) 농번기 주말돌봄방

2014년 현재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번기 주말돌봄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시범실시 돌봄방 9군데 전수의 시설장이고 조사 시기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이었다. 조사 내용은 종사자 현황, 영유아 현황, 운영 현황, 개선의견 등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I-3-6>과 같다. 조사 설문지는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I-3-6>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운영실태 조사

영역	문항 구분	세부 내용
종사자 현황	시설장	연령, 학력, 경력
	돌보미	연령, 학력, 경력, 급여, 근무시간
	직원	취사부, 보조인력 유무 및 인적 사항
영유아 현황	인원	현원, 연령별 현원
	가구 특성	농업인 가구 수
운영 현황	입주 형태	단독/일부, 사용 층수, 신축/리모델링
	운영체 지원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 등 지원 여부
	운영 시간	운영 요일, 운영시간 등
개선 의견	주민 요구	운영연장 요구 여부
	운영 관련	운영의 어려움
	향후 전망	전망, 사업확장 및 지속 의견
	사업 개선 의견	의견 제시

바. 전문가 회의

농촌보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농촌에서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농촌 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다음 <표 I-3-7>과 같다.

<표 I-3-7> 자문회의 참석자

일시	참석자
2014. 6.	정덕희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경 (전국여성농업인센터 보육분과위원장)
	임덕규 (부안여성농업인센터장)

4.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이루어지는 농어촌 보육 서비스 관련 연구는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농어촌 지역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 다문화가정 아동의 양육지원 방안 마련 등 농촌사회의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에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정부부처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농어촌 보육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안상수 외(2013)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어린이집 이외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및 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농업인 센터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실태와 문제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관리주체를 중앙정부로 이관, 역량강화 교육 인력풀 구축,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콘텐츠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설 외(2010) 연구는 산간, 도서, 벽지를 포함한 농어촌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된 소규모 보육시설의 운영모델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제안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은 크게 기준 보육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형과 분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분원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분원형은 다시 아동 및 교사 충원방식과 예산운영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이외에도 직접적인 설치기준과 운영규칙, 지도 감독 및 폐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보육 서비스 사업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검토된 사업은 농어촌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제공하는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 거주 부모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부모협동 공동놀이', 농번기 보육 등 특수보육의 충족을 위한 '농번기 임시보육방'으로 해당사업의 효과성 및 추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규천·최경환(2008) 연구는 농촌지역의 아동복지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아동정책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지원체계의 분산과 유기적 연계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자원이 낭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의 의무화, 농촌에만 적용 가능한 정책 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은설 외(2007)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인구의 감소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농어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농어촌 수요 대처방안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국공립 병설유치원 권역화, 통학버스의 공동 운행, 지역 내 공동시설 내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조손, 다문화가정 등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가정도우미 파견과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서문희 외(2006)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까지 영유아의 장거리 이동문제, 교사수급 어려움, 다문화 및 조손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성 등 농촌보육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우선 공급을 위해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II. 국내외 농촌 보육 사업 현황

최근 농어촌지역의 일반적인 인구 특성은 크게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집중, 귀농인구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림어업 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05년 29.1%에서 2010년 31.8%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2. 28일자)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정 비율이 전체 2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전원생활 추구 등으로 인해 40대 이하 젊은 귀농인구가 2012년(27,008가구)에 비해 2013년에는 1.2배인 32,424가구로 증가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3. 20일자). 201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농어촌지역 영유아(0-5세)는 455천명으로 전국(2,642천명)대비 17.2%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농촌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양육 지원 정책, 해외의 농촌 보육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1. 농촌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실태

2013년 12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3,770개소로 그 중 읍·면, 즉 농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8,269개소로 약 18.9% 정도이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569개소로 전국 2,332개소의 24.4%, 민간어린이집은 3,220개소로 전국 14,781개소의 21.8%, 가정어린이집은 3,224개소로 전국 23,632개소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지역인구가 전체 주민 인구의 18%, 전체 영유아수 대비 농어촌 영유아의 비율이 17.2%(2010년 인구 통계 기준)인 것에 비하면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은 양호한 편이다. 아동은 전국 기준 1,486,980명 중 농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340,626명으로 22.9% 정도이다.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전국 154,465명 중 30,323명으로 19.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전국 108,834명 중 55,069명 50.6%(2013년 기준),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364,113명 중 48,397명 13.3% 정도로 농촌지역은 법인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I-1-1 참조).

〈표 II-1-1〉 농촌지역 어린이집 및 아동정원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어린이집										부모 협동	직장		
	현원	시설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산	6,093	152	655	12	915	11	0	0	2,816	42	1,477	84	12	1	218	2
대구	5,992	141	349	6	1,088	13	0	0	3,748	69	790	52	17	1	0	0
인천	1,295	31	601	12	0	0	50	1	511	10	133	8	0	0	0	0
광주	617	8	0	0	239	4	25	1	353	3	0	0	0	0	0	0
울산	7,398	172	505	7	627	8	236	3	5,170	103	706	45	7	1	147	5
세종	3,714	82	295	3	794	8	374	4	1,631	28	620	39	0	0	0	0
경기	92,471	2,417	7,423	131	3,476	46	2,900	52	59,715	1,029	17,392	1,125	224	10	1,341	24
강원	20,221	447	3,092	55	4,952	84	1,450	33	8,467	157	1,584	103	62	3	614	12
충북	24,356	423	2,188	33	6,802	86	1,589	24	11,236	160	1,842	106	104	3	595	11
충남	40,881	1,045	2,655	48	7,541	108	2,511	48	20,500	362	6,568	458	34	1	1,072	20
전북	16,189	331	1,132	25	4,881	81	2,967	56	6,369	119	790	46	0	0	50	4
전남	27,025	585	2,631	58	8,937	127	2,803	46	9,775	172	2,570	175	0	0	309	7
경북	33,167	939	4,182	102	3,815	51	1,387	27	18,124	358	5,142	394	0	0	517	7
경남	37,899	1,005	3,489	59	4,609	67	1,749	33	20,876	378	6,913	462	20	1	243	5
제주	23,308	491	1,126	18	6,398	76	2,315	34	11,384	230	1,870	127	0	0	220	6
계	340,626	8,269	30,323	569	55,069	770	20,356	362	180,675	3,220	48,397	3,224	480	21	5,326	103

출처: 보건복지부(2013a). 보육통계(2013.12.31.기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유형별 점유율을 전국통계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전국통계에서는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54.0%로 절반이상인 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39.0%, 38.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국통계에서는 5.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3.3%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에서는 각각 6.9%, 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전국 대비 농어촌의 어린이집 유형별 점유율

단위: 개소, %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농어촌	수	8,269	569	770	362	3,220	3,224	21	103	
농어촌	점유율	100.0	6.9	9.3	4.4	38.9	39.0	0.3	1.2	
전국	수	43,770	2,332	1,439	868	14,781	23,632	129	619	
전국	점유율	100.0	5.3	3.3	2.0	33.8	54.0	0.3	1.4	

출처: 보건복지부(2013a). 보육통계(2013.12.31.기준) 자료 재구성

농어촌지역 보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린이집 이외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설치당시 농림부)에 의해 2001년 농촌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25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001년 영동, 서천, 안동, 진주 등 4개 지역의 시범운영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2005년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지자체별로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 교육과 보육사업, 여성농업인 상담,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이 가장 큰 사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터 구성 인력 중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방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센터일수록 보육교사와 공부방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3, p 31-32).

여성농업인센터는 개인이 위탁받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정부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큰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은설 외, 2007, p39).

〈표 II-1-3〉 여성농업인센터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소수	34	38	39	37	38	37	38	39
지원액	3,219	3,621	3,779	3,711	3,795	3,787	4,501	5,4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 내부자료

출처: 안상수 외(2013).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동·읍·면 441개 중 읍면지역이 412개, 동지역은 29개로 읍면지역에 미설치된 경우가 월등히 많다. 즉, 농촌 지역 동·읍·면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아동 수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 보육서비스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설치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된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84개소), 경남(83개소), 전남(75개소), 전북(62개소) 등에서 미설치 읍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현황

구분	계	읍면	동	단위: 개
서울	1	0	1	
부산	6	0	6	
대구	1	1	0	
인천	5	5	0	
광주	4	0	4	
대전	3	0	3	
울산	5	4	1	
세종	1	1	0	
경기	13	10	3	
강원	26	25	1	
충북	29	29	0	
충남	34	33	1	
전북	63	62	1	
전남	77	75	2	
경북	87	84	3	
경남	85	83	2	
제주	1	0	1	
계	441	412	29	

자료: 보건복지부(2013a). 보육통계(2013.12.31 기준)

2. 농촌 영유아 양육 지원 제도¹⁾

1)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0-5세 미취학 영유아 중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수준과는 무관하며, 농어업인 자격 구비서류를 통해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연령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표 II-2-1>과 같다.

1) 2014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관련 사이트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GvmtLifeList.do?lifeArray=001&rsltSearchWrd=%EC%98%81%EC%9C%A0%EC%95%84#>,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함.

〈표 II-2-1〉 농어촌 양육수당 단가

연령	지원 단가(월)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77,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47개월	129,000원
48개월 이상	100,000원
~84개월 미만	100,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a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1001&PAGE=3(2014. 7.12)

2)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은 농어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 지원에 빠질 수 없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정 영유아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필요한 서류는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사실이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동일세대가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령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II-2-2〉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	지원 단가(월)
만 0세	394,000원
만 1세	347,000원
만 2세	286,000원
만 3-5세	220,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bokjiragkr/gwtf/wel/wdsc/search/WelGmtTargetView.do?servId=WII0000416>(2014. 7.12)

3)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추가지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은 농촌 영유아 및 교사

수급 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혼합반 편성 특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가) 운영비 지원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예산지원은 차량운영비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지원제도이다.

먼저 차량운영비를 살펴보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240만원(월 20만원) 차량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반기별로 분할 지원되며,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차량 9인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내에 대상 어린이집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2014년 1월부터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규모와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자세한 지원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2-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원 단가

정원구분	단위: 천원/월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보육사업안내, p419

나) 인건비 및 수당 지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은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과 추가 인건비 지원제도이다.

먼저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쳐우개선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써 실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교사 이외에 시간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도 담임교

사로써 실 근무일수 기준을 충족할시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사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로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실 근무일수만 충족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단,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사업 담당자는 농립축산식품부로써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국고 40-60%, 지방비 40-60% 선에서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두 번째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제공되는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 추가지원 및 취사부 1명을 지원받게 된다. 이때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시설 내 평균 월 지급액의 100%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는 취사부 고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별도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혼합반 편성 특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립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소규모 어린이집 중 도서·벽지지역 어린이집에 한해 지역 내 수급 상황, 학부모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0-2세 영아 연령 전체 혼합반 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영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교사대 아동비율은 혼합반 최저연령 영유아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지역 농촌소규모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 일 경우에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할 내 지자체 승인을 통해 전 연령 혼합반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설치된 읍면에 기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준하여 반편성과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이 완화되었다.

3. 외국의 특징적 농촌 보육 사업

외국 사례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두 국가는 모두 오세 아니아 주에 속해 있고 농업 인구와 농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으로 인해 농촌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육아지원 관련 정책들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어 사례로 참고하기 유용하며 시사점을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가 매우 넓어 농촌이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원주민과 백인 이주민이 혼합된 다민족 국가이어서 도시로부터 떨어져 사는 원주민 집단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는 점 등은 우리나라와 특히 차이나는 상황이므로, 그들의 시행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물론 없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어들어 인프라 성장에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과 보육서비스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농촌의 육아사례가 가진 정책적 아이디어들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가. 호주²⁾

호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2009년에 ‘학교, 고용 및 노사관계부’로 소관 부처가 일원화되었고, 2013년 9월 이후에는 ‘학교, 고용 및 노사관계부’가 다시 교육부와 고용부로 나뉘지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 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서문희·이혜민, 2013: 14-15).

이처럼 호주에 거주하는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주류(mainstream) 서비스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치원은 지역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아동 연령 등이 다양하나 대체로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서문희·이혜민, 2013: 21). 주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보호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발달한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일시보육의 서비스 유형이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28).

1) 비주류 서비스

이처럼 대부분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외,

2) 호주 사례는 대부분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factsheet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http://docs.education.gov.au>). 2014. 7.14 인출.

호주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오지나 벽지에 거주하는 아동, 원주민 가정의 아동을 위해 ‘비주류 서비스(Non Mainstream Service)’라 칭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비주류 서비스는 호주 정부가 ‘주류 서비스’와는 분리된 형태로 실시하는 별도의 보육사업이다. 이에 소요 비용도 주류 서비스에 대한 소득계층별 보육비용 지원체계(Child Care Benefit: CCB)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CCB 혹은 CCR(Child Care Rebate: 보육 환급)체계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는 실비수준의 최소한의 부담만 하면 된다.

이러한 비주류 보육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서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농어촌,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조기 교육과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원주민과 토레스 섬 가정을 위한 문화적으로 친숙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비주류 보육 서비스의 목적은 크게 1) 모든 아동을 위해 아동의 문화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교육적 발달을 촉진하는 질 높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2) 다양한 모든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3) 개별 아동의 강점과 능력,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달적·문화적으로 적합한 놀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주류 서비스에는 ‘탄력적/ 혁신적 서비스(Flexible/ innovative services)’ ‘이동보육서비스(mobile child care services)’,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 (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 ‘토착적 놀이집단(indigenous playgroup)’, ‘취학연령 원주민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Indigenous outside school hours care and enrichment program)’ 등이 있다. 각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탄력/혁신적 서비스(Flexible/ innovative services)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성격의 서비스로 방과후, 종일보육, 일시보육, 이동 다기능 서비스, 농장보육, 다장소(multi-sited) 보육, 24시간 보육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주류 보육서비스가 충족시킬 수 없는 특수한 보육 욕구를 가진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나) 이동 보육서비스(mobile child care services)

이동 보육 서비스는 농촌이나 오지·벽지를 방문하여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놀이집단, 방학(기간의) 보육, 농장 보육, 부모 지원, 장난감·비디오 등의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동 서비스는 매주 1번 정도 작은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또한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정규적인 종일보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보육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공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아동의 연령과 학습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마을에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 이동 보육서비스 차량만 지원하기도 한다(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12).

다)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 MACS)는 원주민 아동과 토레스 섬의 아동의 교육, 사회,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이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 종일 보육과 방과후 보육, 놀이집단, 부모 양육지원, 영양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보육 또는 활동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이 함께 제공된다.

라) 놀이집단(indigenous playgroup)

호주에서 놀이집단은 60~70년대에 걸쳐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되었고, 놀이 집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 촉진된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에서도 놀이 집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지적 놀이집단(supported playgroups)’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김은설 외, 2010: 27).

토착놀이집단(indigenous playgroup)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절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발달, 교육, 사회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이 활동의 사회적·교육적 발달 목표는 더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유치원 입학, 취학, 관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서로간의 지지와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 취학연령 원주민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Indigenous outside school hours care and enrichmen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것이며, 지역사회 내의 특정 시설에서 보육, 조직화된 활동, 숙제 관리, 영양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2) 농어촌(오지, 벽지)의 주류 서비스

호주의 오지나 벽지, 원주민 지역, 토레스 섬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주류 서비스인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In Home Care)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돌봄과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고, 가정 내 보육은 아동의 집에서 돌봄과 교육활동이 제공되는 것으로, 주변에서 보육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보육서비스로는 보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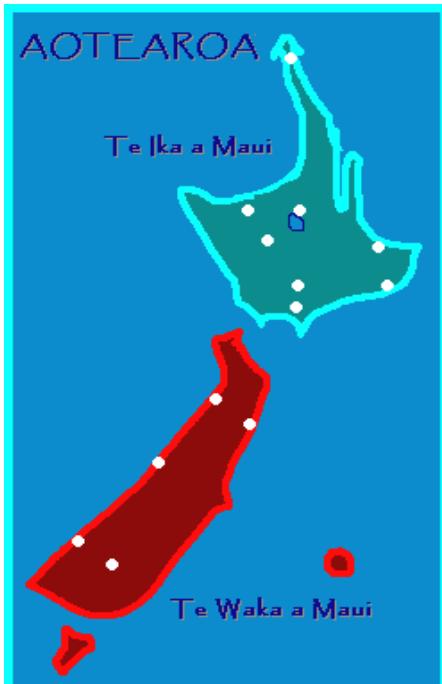
나. 뉴질랜드³⁾

뉴질랜드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REAP: 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이 활동하고 있다. REAP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 기회를 유연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취학 전에서 성인에 이르는 전 생애 과정에 걸쳐 통합적이고 선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9년에서 1982년 사이 뉴질랜드 내 13개 지역에 설립되었다. 그 이후에 추가 설립된 지역 없이 2014년 현재까지 13개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REAP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2006년 센서스 기준으로 342,000명이 거주중인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① 지역적으로 외딴 지역, ② 지구(District) 내에서도 고립된 지역, ③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지역, ④ 지역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 ⑤ 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가 없거나 희소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아래 [그림 II-3-1]과 같이 뉴질

3) 김은설 외(2007) 연구와 REAPANZ(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 AOTEAROA New Zealand)의 홈페이지(<http://www.reapanz.org.nz/>)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랜드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들 13개 REAP를 대표하는 REAPANZ(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 AOTEAROA New Zealand)이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우선적으로 13개 REAP의 상호 이익과 성공, 지원을 위해 존재하며, 개별 REAP 사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REAP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실행할 수 있게 안전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발전시켜 그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방법으로 유아교육, 학교 부분, 성인 학습자, 클라이언트 그룹, 지역사회와 고용주 등의 전 범위에 걸쳐 성취하는데 기여한다.



1. Far North REAP(Kaitaia),
2. Eastbay REAP(Whakatane)
3. Tairawhiti REAP(Gisborne)
4. Central Plateau REAP(Taupo)
5. Central King Country REAP(Taumarunui)
6. Ruapehu REAP(Taihape)
7. Tararua REAP(Dannevirke)
8. Wairarapa REAP(Masterton)
9. Marlborough REAP(Blenheim)
10. Buller REAP(Westport)
11. West REAP(Hokitikia)
12. Central Otago REAP(Alexandra)
13. Southern REAP(Winton)

자료: REAPANZ(2012), Integrated Investment Plan REAP Aotearoa NZ 2013 to 2015, p 5.

[그림 II-3-1] 뉴질랜드 REAP 분포

REAP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및 고등교육위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와의 계약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특정 영역에서의 개별 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개별 REAP이 각기 교육부와 고등교육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

을 하였으나 최근 2년 동안에는 13개 REAP이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 공통된 하나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지원받도록 REAPANZ에서 주관하고 있다.

REAP의 활동은 취학 전 아동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성 특성에 맞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각 영역에서 현존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기관만으로는 수행될 수 없는 보충적·보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84,000명의 참가자가 39,00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REAP의 유아교육 활동은 첫째,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이 질 높은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고, 둘째, 모든 아동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산술 능력 수준을 성취하고, 셋째, 마오리가 마오리로써 교육성과를 즐길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13개의 REAP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이 같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배움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지역마다 운영하는 REAP의 유아교육 활동은 전부 다르지만 활동영역을 구분하여 보면, 개발(development), 유지와 지속(maintain and sustain), 교육과정지원 (curriculum support), 전문성 신장(professional development), 성공을 위한 투자(Ka Hikitia) 정책,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Whānau and community support), 협력(collaboration)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REAP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가족, 지원체계 모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REAP 운영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각 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정규 유아교육과정인 Te Whariki가 지역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로 하여금 유치원 조기 교육부터 받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인 “성공을 위한 투자(Ka Hikitia)”의 성공적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도 시행하고 있다.

개별 REAP의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집단(playgroup)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놀이집단이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조직된 비영리 영유아 센터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김은설 외, 2010 재인용). 이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용이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거단위별 소규모 놀이집단을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 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놀이집단의 운영은 정규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REAP으로부터 보육프로그

램 일반에 대한 정보와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워크숍 및 놀이기구나 학습자료 또는 재정 등과 같은 기타 지원을 제공받는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Marborough REAP과 Eastbay REAP의 경우 농촌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모들에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양질의 보육경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East REAP, Margorough REAP, Central King County REAP, Central Otago REAP 등이 사회개발부(Ministry social development)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위한 전략-부모를 위한 정보(SKIP: Strategies with Kids-Information for Parents)’ 활동을 하고 있다. SKIP은 0~5세 아동의 부모와 양육자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를 양육전략과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SKIP의 비전은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아동을 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끼는 부모와 양육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 ‘최초의 선생님으로서의 부모(PAFT: Parents as First Teacher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REAP도 있다. PAFT 프로그램은 부모가 아동의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란 철학을 근거로 부모들이 그들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astbay REAP에서는 0~3 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학습과 아동을 위한 발달 점검을 포함하여 매달 가정 방문 하는 방식으로 PAF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농촌지원 활동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교육 뿐 아니라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13개의 REAP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 수혜 아동의 특성, 특히 마오리 족과 폴리네시안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다. 시사점

호주의 농촌 보육 지원 정책 사업 중 특히 이동보육서비스(mobile child care service)와 비주류 서비스 중 하나로서의 원주민 아동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하다. 이동보육서비스는 방학시간(또는 농번기) 보육, 부모양육지원,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를 구비하고 교사가 차량으로 이동하여 농어촌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농번기나 방학 등 시한이 정해진 보육서비스는 공간적으로 고정된 서비스보다 설치와 철거가 수월한 이동식 보육이 적절하다는 점이다. 공간과 구비 시설의 설치에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아야 하고 철거될 때도 교사 등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면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 사업에서는 마을에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 차량으로 교구 등이 지원되어 교사의 개별적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돋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영유아 인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소수의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향후의 전망을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호주의 주류 서비스에 속하는 가정보육(family day care)과 이동보육서비스를 접합하여 보육교사가 있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식 교재교구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가정보육이 내실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호주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으로, 농촌의 경우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주말돌봄방 등 영유아 수가 부족한 경우 초등 저학년 방과후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REAP 프로그램에서는 ‘놀이집단(play group)’과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주의해서 볼 수 있다. 보육교사 없이 부모들 간 자율 모임을 통해 육아정보교환, 보육서비스 공동 운영 등이 이루어지는 놀이집단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시도된 바 있는 영유아 가정 간 공동육아모임방 등의 운영에 적용해볼 만하다. 또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에서 뉴질랜드 REAP 방식의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부모 육아정보 제공과 가정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일수록 부모에 대해 육아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 양육에 필요한 환경적 자원의 지원,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 등이 다각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모임이 외국 출신 부 또는 모에게 정서적지지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농촌 활용에서 갖는 시사점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III. 농촌 영유아 돌봄 사업 현황 및 수요 분석

본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촌 보육 지원 사업의 유형, 특성, 지원내용, 그리고 수요 등을 살펴보았다. 2014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대표적 농촌 보육 사업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이동식놀이 교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등이 있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가. 사업 취지 및 지원 내용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가 줄어 아동 수가 적어진 농촌 및 도서·벽지 등 일반 어린이집을 설치할 충분한 영유아 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소수의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시범사업을 필두로 시작한 국고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나 2012년 동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로 이관되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그 역할이나 형태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과 더 명확한 구별을 위해 사업명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 수요를 가진 인구가 충분치 않은 지역은 원활한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진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일반 국공립 시설을 설치하기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정부의 별도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보육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통합 관점의 형평성 제고라는 큰 그림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감수해야 했던 보육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국공립 시설 접근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실제로는 ‘농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이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인데 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특수한 농촌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14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농촌소규모 어린이집(이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정의는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399). 또한 보육사업안내는 이 사업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이지만 시설의 명칭은 ‘OO어린이집’ 또는 상황에 따라 ‘OO어린이집 △△분원’으로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들어 기존 규정과 달리, 10인 이하 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에도 직접 또는 분원 운영이 모두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설치된 읍면에 기존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준하여 반편성과 혼합반 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이 완화되었다.

1) 설치 절차 및 요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요건이 있다.

설치기준이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a: 400-40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건물은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을 할 경우는 부지 매입, 건물 신축에 따르는 비용 규모가 크므로 국비지원 한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설치 예산 규모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실제 설치가 쉽지 않다 하겠다.

2) 재정 지원

재정적 지원은 설치시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개소당 152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때 국고보조율은 70%이다. 3~15인 이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는 지원단가 1,270,000원/m²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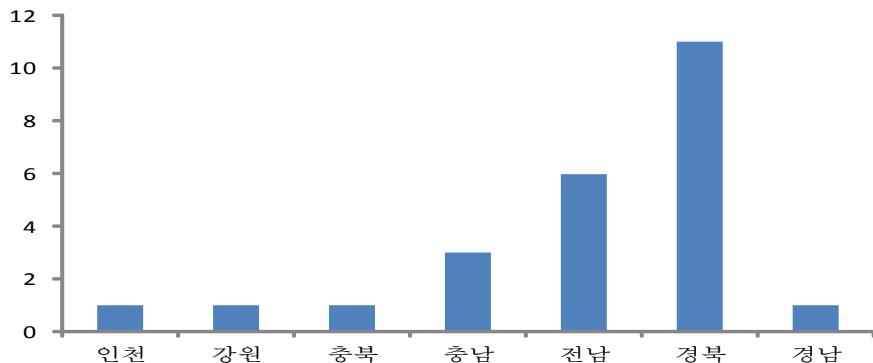
하여 2014년 기준 리모델링·신축비로 81,725천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숙박시설을 신축하는데 20,000천원, 기자재 및 장비 구입 29,000천원, 차량구입 22,000천원 등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에는 리모델링·신축비로 108,966천원을, 자자재 및 장비 구입에 22,000천원을, 차량구입으로 22,00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용이 제외되고 동일한 총액이 지원되게 된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는 개소당 최대 13,700천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1인당 월 10만원(저자 주. 시설당 원장 및 취사부까지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됨), 보육교사 교통비 1인 월 10만원 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해 교재교구비 연 2회 회당 영유아 수에 따라 500천원~1,000천원, 프로그램개발비 연간 최대 2,100천원, 냉·난방비 연 6회 월 200천원 이내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

나. 사업 현황 및 성과

2009년부터 시작된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 사업(현 농촌아이돌봄센터)의 결과로 현재까지 33개소가 설치 지원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해마다 설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사업 초기인 2009년에 10개소, 2010년 5개소, 2011년 10개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5개소, 2013년 3개소가 설치계획 되었으나 이 중 단시간 내 개원 예정인 곳이 5개소, 사업포기 지역이 1개소, 그리고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운영이 중단된 곳 3곳으로, 결과적으로 2014년 7월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총 24개소이다. 그러나 이 24개소 중 현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규정에 의해 ‘소규모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고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4개소를 제외하면 실제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총 20개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I-1-1>은 소규모 어린이집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방이 설치 11개소로 이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남이 6개소, 충남이 3개소 등 의 순이다(그림 III-1-1 참조). 이는 경북과 전남에 농가 인구가 많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반면 인구가 많고 평야지대 비율이 높은 경기도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거의 없어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 III-1-1〉 농촌아이돌봄센터(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현황

운영 상황	지역	시군구	시설명	영유아		사업 연도	비고
				정원	현원		
운영중	전남	인천	강화	삼산	20	16	2009 기부체납
		강원	화천	봉오다솜	17	15	2009 군부대
		충북	괴산	송면	20	10	2012 산간
		충남	공주	사곡	20	19	2011
		진도	조도	20	8	2009 도서	
		여수	남면	11	9	2010 도서	
		순천	상사	15	12	2010	
		완도	넙도(분원)	9	7	2012 도서	
		곡성	산들	20	9	2011	
		영암	금정	20	14	2011	
운영예정	경북	안동	서부(분원)	12	7	2009	
		의성	춘산(분원)	20	9	2009	다문화
		상주	화북	20	20	2010	
		영천	임고보듬이	20	20	2010	기부체납
		예천	용문	20	12	2011	
		봉화	명호	20	12	2011	
		봉화	물야	20	13	2011	
		예천	하리	20	20	2011	기부체납
		문경	동로	20	19	2012	
		경남	함양	서상(분원)	20	11	2009 다문화
운영 중단	전남	소계	20				
		충남	금산	제원	-	-	2013
		진도	군내	-	-	2012	도서
		신안	장산	-	-	2012	도서
		완도	금당	-	-	2013	도서
		진도	침계	-	-	2013	도서
		소계	5				
		전북	장수	관두마을	-	-	2009
		전남	신안	고이(분원)	-	-	2011 도서
		전남	신안	장도(분원)	-	-	2009 도서
일반 국공립 전환	충남	강진	-	-	-	(2013)	사업포기
		소계	4				
		금산	해맑은	32	31	2009	다문화
		금산	남이	27	25	2010	다문화
		경북	경주	산내	28	21	2009 산간
		경주	천북	25	23	2010	
계		소계	4				
		계	33				



[그림 III-1-1] 시도별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수(20인 초과 시설 포함)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연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2009년에 10개소, 2010년 5개소, 2011년 10개소, 2012년 5개소, 2013년 3개소 등으로 사업을 계획했고 이 중 중도 포기나 운영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면 더 줄어든다. 다음의 <표 III-1-2>는 연도별 설치 현황을 나타낸다.

<표 III-1-2> 연도별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¹⁾	2015	2016
개소 수	10	5	10	5	3	3	2	5

1) 2014년 이후는 설치 신청 수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사업초기 3년간 25개가 설치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인 2012년부터의 3년간은 11개 설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지역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여 더 이상의 많은 수요가 발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

다.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실태

2014년 7월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20개소 전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1) 시설 환경 실태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을 보면, 20개소 중 13개가 단독 어린이집 건물이고 7개는 복지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복합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영천 임고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1층만 사용하고 있고, 9개는 신축건물, 나머지 11개는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실 구성을 보면 보육실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2 내지 3개를 가지고 있고 보육실 외에 다른 실이 없는 경우도 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실이 있는 곳은 12개소였고 이 중 2개는 원장실 겸용이었다.

〈표 III-1-3〉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환경 실태

행정군	시설명	건물형태	사용 층	건축유형	실 구성 ¹⁾	놀이터
강화	삼산	단독	1층	신축	보육실2 사무실1	실외
화천	봉오다솜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2 사무실1	간이실외
진도	조도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 사무실1	실내
안동	서부(분원)	건물 일부	1층	리모델링	보육실2 유희실1 사무실1	실내
의성	춘산(분원)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다용도실1	간이실외
함양	서상(분원)	단독	1층	신축	보육실3 사무실1 유희실1다용도실1	간이실외
여수	남면	건물 일부	1층	신축	보육실2	실외
순천	상사	건물 일부	1층	신축(한옥)	보육실2	실외
상주	화북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 사무실1	실외
영천	임고	단독	1,2층	신축	보육실3 원장실1	실외
공주	사곡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	인근
완도	넙도(분원)	단독	1층	신축	보육실2 사무실1	실외
곡성	산들	단독	1층	신축	보육실3	간이실외
영암	금정	건물 일부	1층	신축	보육실2 휴게실1	실외
예천	용문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	간이실외
봉화	명호	건물 일부	1층	리모델링	보육실2 사무실1 로비공간 1	실외
봉화	물야	단독	1층	신축	보육실2 사무실1 도서실1 로비공간	실외
예천	하리	단독	1층	리모델링	보육실3 원장실1	간이실외
괴산	송면	건물 일부	1층	리모델링	보육실2 사무실1	실외
문경	동로	건물 일부	1층	리모델링	보육실2	없음

1) 모든 어린이집이 구비하고 있는 조리실, 화장실 등을 실에서 제외함.

다수가 실외 놀이터가 있다고 하였으나 6개소에서는 실외놀이터로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마당, 현관입구 등 일부 공간에 간이식 놀이터를 두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실외놀이터 및 놀이기구 구비가 부족한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다.

2) 원장 및 교사 실태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평균 연령은 44.4세이고 75%이상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18.4년의 교사 이상 평균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겸임을 하고 있는 원장은 8곳이고 6곳의 분원은 본원의 원장이 분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

〈표 III-1-4〉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실태

군 시설명	원장				교사 ²⁾				단위: 세, 년, 명
	연령	학력	경력	겸임 ¹⁾	수	연령 (M)	최저 학력	최고 경력	
강화 삼산	53	전문대	9	-	3	37	고졸	11	1
화천 봉오다솜	37	전문대	17	O	2	36	고졸	7	1
진도 조도	54	대졸	19	-	2	48	전문대	7	2
안동 서부(분원)	46	석사	25	(본)	1	46	대졸	24	1
의성 춘산(분원)	53	대졸	33	(본)	2	34	전문대	24	1
함양 서상(분원)	44	대졸	22	(본)	3	32	전문대	6	1
여수 남면	41	석사	22	O	1	41	석사	8	1
순천 상사	41	석사	18	O	2	49	대졸	3	0
상주 화북	45	석사	17	O	4	28	전문대	5	2
영천 임고	47	대졸	24	O	3	34	전문대	12	2
공주 사곡	35	전문대	13	-	3	30	전문대	13	0
완도 넙도(분원)	45	석사	16	(본)	2	50	대졸	2	2
곡성 산들	40	전문대	18	-	2	36	고졸	8	1
영암 금정	39	대졸	7	O	2	39	전문대	3	2
예천 용문	38	대졸	8	-	3	34	전문대	11	1
봉화 명호(분원)	53	고졸	25	(본)	2	35	전문대	21	2
봉화 물야(분원)	55	석사	31	(본)	2	45	대졸	22	2
예천 하리	41	대졸	16	-	3	29	전문대	8	0
괴산 송면	39	대졸	6	O	1	46	고졸	4	0
문경 동로	42	대졸	21	O	3	32	대졸	13	1
(총 20개) 평균	44.4		18.4		2.3	38.1		10.6	

1) 원장의 담임 겸임 여부. O: 겸임 -: 전임 원장. (본): 본원의 원장이 분원 원장 겸함.

2) 교사의 연령은 산술평균임. 지역출신은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군 거주자 수를 기록함.

한 원당 평균 교사 수는 2.3명, 교사 평균 연령은 38.1세, 그리고 교사들 중 가장 경력이 높은 사람의 평균 근무년수는 10.6년으로 나타났다.

분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6개소 중 4곳이 경력 20년이 넘는 교사를 두어 분원 책임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곳에서 고졸 학력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교사를 모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6개소이다. 20개 어린이집 중 3개소는 교사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2개소는 원장이 교사 겸임을 하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1개소(안동 서부 분원)은 분원으로 원장이 없으므로 교사 1명이 1개 반을 보육하고 있다. 안동 분원의 경우 교사는 본원의 교사가 순환적으로 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분원은 교사이외에도 취사부와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영유아 현황 및 차량 운행, 기타 인력 실태

2014년 7월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는 총 263명으로 이 중 영아가 208명이어서 79.1%를 차지한다. 20개 어린이집 중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경북의 상주, 영천, 예천(하리) 등 3개소이고 충남 공주와 경북 문경, 경북 예천(용문)은 정원 20명에 1명이 부족한 19명을 현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전체의 30% 시설이 정원의 95%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남 진도, 경북 의성, 전남 곡성 등 3곳의 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중 8, 9명 영유아만을 보육하고 있어 정원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의성군 어린이집만 제외하면 경북의 나머지 10개소는 일반국공립으로 전환되었거나 정원이다 채워진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있어 설치 지역과 수요 예측이 잘 부합하는, 성공적인 설치 및 운영 사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북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개소 중 3개소를 제외한 17개소에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이 중 5곳은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원장 또는 취사부(영천군 임고어린이집 경우)가 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와 영암군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임을 맡고 있는 원장이 차량운전을 하고 있어 1인 3역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곡성의 경우는 원장의 차량으로 등하원 지원을 하고 있고, 문경의 경우는 전세차량 이용으로

인해 임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안동과 봉화는 교사 외에 취사부도 동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취사부나 기사 이외에 지원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주 사곡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도우미를 시간제로 이용하고 있고 충북 괴산 송면어린이집은 4개월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보조 인력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5〉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 및 차량운행, 기타 인력 실태

단위: 명, 개

군	시설명	영유아			차량 운행				기타 인력
		정원	현원	반	여부	소유	기사	동승자	
강화	삼산	20	13	(3)	3	○	○	○	교사
화천	봉오다솜	17	15	-	2	○	○	○	교사
진도	조도	20	8	-	2	×	-	-	-
안동	서부(분원)	12	7	-	1	○	○	○	취사부
의성	춘산(분원)	20	2	7	2	○	○	○	교사
함양	서상(분원)	20	11	-	3	○	○	○	교사
여수	남면	11	5	4	2	○	○	○	교사
순천	상사	15	12	-	2	○	○	×	교사
상주	화북	20	14	(6)	4	○	○	○	교사
영천	임고	20	11	9	3	○	○	×	교사
공주	사곡	20	19	-	3	○	○	×	교사
완도	넙도(분원)	9	7	-	2	×	-	-	-
곡성	산들	20	6	(3)	2	○	×	×	교사
영암	금정	20	11	(3)	3	○	○	×	교사
예천	용문	20	10	9	3	○	○	○	교사
봉화	명호(분원)	20	12	-	2	○	○	○	취사부
봉화	물야(분원)	20	13	-	2	○	○	○	교사
예천	하리	20	9	11	3	○	○	○	교사
괴산	송면	20	9	(3)	2	×	-	-	누리과 정보조
문경	동로	20	14	(5)	4	○	×	○	교사
(총 20개) 계		208	55	50					

1) 원장 소유 개인차량 이용

(): 영아-유아 혼합반 보고로 인해 혼합반 영유아 수를 이분한 대략의 유아 수임.

4) 운영 현황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오전 8시경부터 오후 6시 5분경 정도까지 일과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일일 평균 1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열어두는 곳은 강화, 의성, 상주, 곡성, 예천 등 5곳으로 토요일 보육을 운영하는 비율은 25%정도이다. 대부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녁 9시까지 연장 보육을 하는 곳은 상주 지역 한 곳이었고 휴일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이 구성해두고 있었다.

〈표 III-1-6〉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군 시설명	일과 시간		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시작	종료	토요일	연장보육	휴일보육	
강화 삼산	8:00	18:00	○	×	×	○
화천 봉오다솜	7:30	18:30	×	×	×	○
진도 조도	7:30	19:00	×	×	×	○
안동 서부(분원)	8:00	17:30	×	×	×	○
의성 춘산(분원)	8:00	19:00	○	×	×	○
함양 서상(분원)	8:00	18:00	×	×	×	○
여수 남면	7:30	19:30	×	×	×	○
순천 상사	7:40	18:10	×	×	×	○
상주 화북	8:30	17:30	○	○	×	○
영천 임고	8:30	16:30	×	×	×	○
공주 사곡	8:00	19:00	×	×	×	○
완도 넓도(분원)	8:00	17:00	×	×	×	○
곡성 산들	8:00	17:30	○	×	×	○
영암 금정	8:00	19:00	×	×	×	○
예천 용문	8:00	18:00	×	×	×	○
봉화 명호(분원)	9:00	18:30	×	×	×	○
봉화 물야(분원)	7:40	17:40	×	×	×	○
예천 하리	8:00	18:00	○	×	×	○
괴산 송면	8:30	18:00	×	×	×	○
문경 동로	8:00	18:00	×	×	×	○
(총 20개소) 평균	8:01	18:07				

5) 운영상의 어려움

소규모 어린이집이 운영상 겪는 어려움은 차량운행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7명 모두가 차량과 관련한 어려움을 제시한 가운데, 차량구입이 필요하다(충북 괴산)는 의견이 있고 다수는 운행시간이 길고 거리가 멀다는 의견, 원장이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위해 기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사가 동승하지 않아도 되도록 차량 승하차 도움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다음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꼽은 비율이 85.0%로 높았고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 충족의 어려움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유아수가 적어 정원이 차지 못하는 것과 인건비 지원이 연관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 교사 호봉을 옮겨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데 부모님들의 경우 돈을 내라고 하면 부담된다고 잘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경북 예천 하리어린이집)

정원이 차면 그나마 나은데 인원이 적다보니 본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전입해 오는 상황이에요. 군에 요청 중이나 아직 모르겠네요. (경북 의성 춘산어린이집)

있는 아동 수로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원활히 충족되질 않습니다.(전남 곡성 산들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구조에요. 그렇지만 단 1명의 아동이라도 있으면 교사는 존재해야 하는데 3명 이하라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충남 공주 사곡어린이집)

그 외에, 교사실 부족, 조리실 공간 부족, 실외놀이 공간 불충분 등의 원인으로 시설설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고(60.0%), 거주지에서 거리가 멀어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보니 인맥으로 구하여 연령이 높고 고졸인 교사를 채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교사채용의 어려움도 제기하였다(60.0%). 또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 때문에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맞추다보면 오전에 진행하기도 하여서 어려움이 있으나 몇몇 어린이집의 경우 근방의 타 어린이집, 본원, 병설유치원과 연계하여 특별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특별활동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7〉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상 어려움

단위: 건, %

어려운 점	있음		없음	
	수	비율(%)	수	비율(%)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 충족 어려움	16	80.0	4	20.0
원아 모집으로 인한 인근 유치원과의 갈등	2	10.0	18	90.0
주변 읍면 소재 타 어린이집과의 갈등	1	5.0	19	95.0
지역 주민과의 갈등	0	0.0	20	100.0
교사 채용의 어려움	12	60.0	8	40.0
취사부 등 기타 인력 채용의 어려움	7	35.0	13	65.0
운영비 부족	17	85.0	3	15.0
시설설비 불충분	12	60.0	8	40.0
차량운영의 어려움	17	100.0	0	0.0
특별활동 운영 어려움	9	56.2	7	43.8

6) 운영비 지원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5가지 제도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이다. 이 각각의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원장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지원은 연 210만원이 지급되는 프로그램개발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개 소 중 13개소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으로 꼽았다. 그 이유로는 특별활동비, 견학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 부모 부담이 줄어 호응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이유로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냉방비/난방비로 구분되어 효율적 사용이 어렵고 월에 따라 20만원이 남기도하고 부족하기도 한 문제도 거론되었다. 또한 6월이나 11월이 포함되지 않는 등 지원 월을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아동 수에 따른 지원보다는 면적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1-8〉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만족도

단위: 건

지원 항목	선택 빈도(총 20개원 응답)	
	가장 만족	가장 불만족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월 10만원	4	8
보육교사 교통비 월 10만원	5	5
교재교구비 연 2회 최대 100만원/회	9	2
프로그램개발비 최대 연 210만원	13	2
냉·난방비 월 20만원 연 6개월	1	11

한편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에 대해서도 비교적 불만의 소리가 높았는데, 영수증 첨부 등 서류가 까다로워 업무 부담이 있고 사후 지급되다보니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취사부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한 반면 원장은 제외되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으며, 취사부의 경우는 자기개발비보다는 교통비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재교구비 등에 대해서도 선결 재 후입금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7) 요구 사항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을 꼽았다. 20명 중 8명이 1순위로 응답하였다. 2순위 응답에서는 차량유지비가 대표적 운영비 지원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순위에서 나온 응답 빈도를 합치면 가장 높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에서 영유아 수 변동이 커서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이 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져왔고, 농촌에서 장거리 운행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운행에 대한 지원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와 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서는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외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사 연수 기회 증가, 대체 인력 활용 용이, 교사 및 원장 인건비 100% 지원, 겸임 원장 처우 개선 등의 요구를 들었고, 이와 더불어 자자체의 소규모 어린이집 유태와 운영 지원에 대한 관심 고조를 특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소규모 어린이집 재정 지원 강화 필요 요록

단위: 건

필요한 지원	선택 빈도 (총 20개소 응답)		
	1순위	2순위	계
환경개선비	4	2	6
교재교구·기자재 구입비	2	1	3
교사 인건비	8	1	9
교사 외 직원 인건비	2	2	4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4	9	13
프로그램 운영비(현장학습비 등)	-	1	1
원장 인건비	1	2	3

라. 향후 수요

본 보고서 6-9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수요조사 대상 36개 면(面)과 그들이 속한 28개 군(郡)을 표집하고 군의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비교적 저조한 수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즉,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조사 대상 27개 군 중 4개 군(6개 면) 지역으로 나타나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요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10>와 같이 충북 영동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남 신안군에서 뚜렷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상촌면과 매곡면 등 2개 면에 귀농인구가 증가하여 영아보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신안군은 도서인 2개면에 설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은 영아전담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예산군 광시면의 경우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 면이 없어 어린이집이 필요하나 국공립설치 계획은 없다고 담당자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예산군이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린이집 사업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총 6개소의 어린이집 설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치 요구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면서 설치 후 운영에 우려를 보이는 중도적인 응답 지역이 옥천군, 김제시, 임실군, 화순군 등 8개 군으로 조사되어 이를 또한 상황이 변한다면 설치 요구로 돌아설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설치 수요지까지 포함하면

총 14개가 되어 상당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 중도적인 응답 지역의 경우 지자체 설치 분담비를 면제해주거나 이웃한 면의 기존 어린이집과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충북 옥천군과 전북 임실군의 경우 면 지역이 넓어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영유아 모집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어려워 설치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 대상 구체적이고 면밀한 수요 조사가 더 진행된다면 설치를 위한 판단이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장기 전망을 보고 영구 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단기 요구에 대응하는 시설이 있다면 이러한 방안에 따른 설치 수요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사대상 중 14개 군은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저자 주.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는 설치가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임). 이들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보면, 인근에 이용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고 이를 어린이집도 정원 미달인 상태라는 것(강원도 영월, 전북 정읍, 전북 진안, 전남 해남, 경북 의성, 경남 의령), 유아가 병설유치원을 이용하여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충남 청양, 전남 보성, 경북 의성), 아동수가 적어 수요가 없다는 것(경북 봉화, 경남 통영) 등이 있었다.

〈표 III-1-10〉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수요 조사 결과

시·도	조사대상 읍·면	시설 수요	비고
인천 광역시	덕적면(옹진군)	×	-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예정임. - 더 이상 미설치 지역 없음.
강원도	김삿갓면, 상동읍(영월군)	×	- 영월읍까지 10분 거리이며, 인근 면 어린이집 정원도 차지 않는 실정임.
충청 북도	청성면(옥천군)	▲	- 면이 넓어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원아 모집 전망은 밝지 않음.
	양산면(영동군)	◎	- 상촌면과 매곡면 에 시설 설치 필요함. - 귀농인구가 증가. 영아보육 긍정적 전망
충청 남도	장평면(청양군)	×	- 인가제한 없음. 유아는 병설유치원 이용 - 수요가 없을 것임.
	서부면(홍성군)	○	- 설치 검토 중임. 영아전담시설 필요. - 영아는 차량이용 곤란. 균접시설 필요함.
	광시면(예산군)	○	- 인근 3개면 어린이집 없음. - 국공립 설치 계획 없어 민간 타진 중임.

시·도	조사대상 읍·면	시설 수요	비고
전라 북도	망성면(의산시)	△	- 충남 경계지역으로, 충남쪽으로 다님. - 아동 수는 있으나 안다니는 애가 없음.
	산내면(정읍시)	×	- 이웃하는 면의 어린이집이 수용 가능
	공덕면(김제시)	△	-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나, 소규모 운영 희망자가 있다면 생각해 볼 만함.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진안군)	×	- 설치 민원이 없었음. 차량이용하여 다님. - 인근 어린이집 정원 미충족이 문제임.
	계북면(장수군)	△	- 주변 어린이집 반대 심함. - 과거 설치 요구 민원이 있는 적이 있음.
	신덕면, 강진면, 덕치면(임실군)	▲	- 가까이에 어린이집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수요가 많지는 않음.
	심원면(고창군)	×	- 신규 시설 설치는 정책상 불가능함.
전라 남도	고흥군	△	-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낮음. - 이동거리가 먼 이웃 면 시설을 다님.
	보성군	×	- 정원 충족률이 낮고 영유아 수가 줄어듦 - 유아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화순군	△	- 수요 신청 지역이 있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진행시키지 않음.
	강진군	×	-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는 없음.
	해남군	×	- 인근 지역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음. - 신청하였다가 설치 부적절 지역 결정됨.
	장성군	-	-
	신안군	◎	- 2개 면(도서)에 각각 설치 신청 이미 함.
경상 북도	부항면, 대덕면(김천시)	△	- 차량 이동 시간이 길. - 아동 수가 줄어 필요성은 있으나 효율성이 없음.
	구천면, 단밀면(의성군)	×	- 인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설치 불필요
	소천면(봉화군)	×	- 아동 수가 적어 수요가 없음.
경상 남도	욕지만, 한산면 (통영시)	×	- 도서 지역이지만 아동 수 적어 수요 없음.
	가례면(의령군)	×	- 인근 면 시설, 차량 이용. 수요 없음.
	이방면(창녕군)	×	- 읍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세울 계획임.
	영오면(고성군)	×	- 작년에 기존 시설을 폐쇄한 상황임.
계	◎, ○: 4개 군, ▲: 2개 군, △: 6개 군 ×: 15개 군		

* (문제점 개선 후 잠재적 설치 가능성 포함) 총 필요(가능성) 개소 수: 14

◎: 2개소 이상 설치 필요함.

○: 설치가 필요함.

▲: 설치가 필요하나 향후 정원 충족 전망 어두움.

△: 상황상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설치는 어려움.

×: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

2. 이동식 놀이교실

가. 사업 취지 및 지원 내용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미설치 농어촌 지역에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보건복지부, 2011a: 344) 영유아 발달을 도모하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을 구비하고 보육전문교사가 동반 이동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및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이동식 놀이교실(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을 운영하였다(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20).

이는 일종의 가정 육아지원 사업으로, 접근성 부족 등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육서비스 기회가 제한되는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김은설 외, 2010: 53).

이 사업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한 보완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동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여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 아동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장점을 지니며, 특히 귀농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라 하겠다(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20). 특히 이 사업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놀이활동 및 이동 대여 프로그램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닌다(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은 어린이집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에 놀이감과 언어활동용 도서를싣고 농어촌 마을에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운영 모델이 개발되었다(김은설 외, 2010: 53; 보건복지부, 2011a: 345). 이동식 놀이교실(놀이버스)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며, 사업당 130백만원을 국고보조율 70%로 보조하나, 지원 첫 해 이후에는 놀이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해당지자체에서 부담해야했으나(보건복지부, 2011a: 344),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여전히 국고보조율 70%를 유지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3).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연간 개소당 1억 3천만원(국고 9,100만원, 지방비 3,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액은 차량임대료 및 유류비, 보관비, 장난감구입비, 인건비(총액 40%이하),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비, 세척비 및 수리비(월20만원 이상 시 사유 기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다(농림수산식품부, 20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사업은 2013년까지 지원을 하고, 현재는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계속지원 필요성을 요청하여 2015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재추진될 예정이다.

나. 사업 현황 및 성과

이동식 놀이 버스 사업은 2009년 7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육지원사업 공모로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에서 ‘장난감 및 동화책 이동 매직버스’ 사업이 시범 실시 되었다(김은설 외, 2010: 114). 2010년 4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나 진행 상 어려움을 겪은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실시되었고, 2011년에는 전남, 전북 2개 지역에서 운영되었고(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20), 2012년에는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2010~2013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는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없어 사업이 종료 혹은 중단된 상태이다.

<표 III-2-1>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사업 종료 전까지 운영했던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표 III-2-1〉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 운영 결과

구분	전라북도 ^{주)}	전라남도
사업주관	전북보육정보센터(전북유아종합지원센터)	전남보육정보센터-(전남유아종합지원센터)
순회지역	7개군 19개 읍·면(2013)	6개군 13개면 (2010-2011)->7개군 23개면(2012)->9개군 20개면(2013)
주요 사업	-놀잇감, 그림책 대여 -영유아 발달검사 및 부모 양육검사	-육아용품 및 놀잇감, 동화책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구분	전라북도 ^{주)}	전라남도
활용현황	-부모-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운영(영유아 발달검사, 전문육아상담) -다문화 프로그램 책자 및 자료 배부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연령별 인형극, 캠프 부모교육, 아빠 참여 프로그램 등)
	회원	251명(2013. 11. 30 기준)
	구비현황	장난감 295종, 동화책 1,499권 장난감 2,022점, 도서 2,058권, DVD 233개, 교재교구 52점
	장난감·도서대여 육아지원프로그램	- 4,506건 - 총 9회 470명 참여

주: 전라북도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사업계획서(2013.3) 내용을 참조함.
 자료: 1)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2013.2). 2013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영·유아가 행복한 부모-자녀 놀이교실 사업계획서.
 2)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13).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추진 현황 및 활용계획.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동식 놀이교실(놀이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가 사업을 주관하였다.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의 주요 내용은 1) 놀잇감, 도서 등의 대여 사업, 2)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사업을 운영하였던 전남·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러한 종류별 사업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였다.

2013년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책 읽기, 언어·수놀이, 미술활동 및 창의력 활동을 실시하고 부모에게는 육아 상담, 장난감 활용법 안내, 부모-자녀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가가호호 보육프로그램', 성폭력예방인형극, 여름캠프,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영유아발달검사 (KCDR-R), '전문가연계 부모상담',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하이터치)', '산타행사', '육아정보지 제작·배포', '부모-자녀 놀이프로그램' 배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통신문 제작·배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III-2-2>와 같다.

4)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표 III-2-2〉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내용(2013)

	내용	성과
이동식 대여사업	○ 장난감 830종, 2,086개 보유, 도서 189종 2,058권 보유 ○ 이동식 놀이버스로 2주 1회, 1일 1~2마을 방문. 동일시간에 마을 방문을 통한 지원(거점지역 및 가가호호 방문), 도서지역은 택배로 대여/반납	장난감 3,516점, 도서 862권 대여
가가호호 프로그램	· 유아: 동화책 읽기, 언어·수놀이, 미술활동 및 창의력 활동 · 부모: 영유아 육아상담, 장난감 활용법 안내, 부모-자녀 놀이활동 제공	총 56명 참여
성폭력예 방인형극	· 성 학대 위험상황에 대한 이해 · 위험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 습득	2회 실시 총 61명 참여
여름캠프	· 물놀이(물총놀이) · 유괴, 실종예방 안전 DVD 상영 · 모기퇴치 목걸이 만들기 · 요리활동	3회 실시 총 93명 참여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	·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 연령별 부모의 역할 · 부모-유아 대화법	총 22명 참여
KCDR-R 영유아발달검사	-	총 146명 참여
전문가 연계 부모상담	·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 안내 · KCDR-R 결과 상담 · 육아시 궁금 사항 상담	총 15명 참여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 행사프로그램 진행 · 부모교육-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	총 124명 참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하이터치)	· 비눗방울 탐색 놀이 · 음악듣고 신체 표현	총 47명
산타행사	· 영화상영 · 케이크 만들기 · 솔방울 미니트리 만들기	5회 실시 총 218명
육아정보 지 제작	· 형태: 정보지(소책자) · 배부방법: 직접 배부 · 내용: 육아정보, 부모교육, 보육정책 등	총 2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 통신문	· 형태: 가정통신문 ·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 배부방법: 직접 배부 · 내용: 영유아 자녀 양육방법	총 4회
부모-자녀 놀이 프로그램	· 형태: 가정통신문 · 배부방법: 직접 배부 · 내용: 장난감 활용 방법 안내, 연령별 놀이 방법 안내	총 4회

자료: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2013). -농어촌지역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2013년 결과보고서

도서나 장난감 대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영유아기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도 육아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등(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남지역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주체인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및 학부모 대상 간담회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회가 제한되며, 육아정보나 도서·놀잇감·도서 등 일종의 문화혜택이 도시지역과 차이나는 농어촌 지역에서 본 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전라남도 면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았음이 제기되었다. 지속사업이 아닌 형태로 매년 사업심사가 이루어져 사업이 잠시 중단되는 동안⁵⁾에도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민 요구가 많았으며, 예산 지원이 중단된 2014년에도 이러한 서비스 제공 요구에 따라 인근지역인 무안을 중심으로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완도는 완도청년회의 택배비 부담으로 장난감을 택배로 대여/반납하는 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전라남도는 향후 예산지원만 재개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고 더 많은 주민에 사업을 확장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다. 향후 수요

1) 농촌 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농촌 소규모보육시설(농어촌공동돌봄센터) 사업을 맡고 있는 각 도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에 중단되어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의 사업 수요와 추진 의향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경기도, 경상북도와 제주도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응답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2014년, 2015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 필요성과 수요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전라남도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원이 안되면서 중단된 상태이어서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진행하던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지원 중단으로 완전히 폐기한 상황이므로 재추진의 의지는 크게 높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원, 충북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보겠다.

5) 간담회 참석 어머니들은 이를 '빙학'이라 칭함.

〈표 III-2-3〉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1(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지역	사업 필요성 인식	사업 추진 의향	비고
경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지 거주 아동에 좋은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 생각함. -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필요한 지역이 꽤 있음(연천, 포천 등)
강원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 진행하였으나 수요가 없었음. - 수요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충청북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요가 없었음.
충청남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놀이교실에 대한 수요는 알 수 없음. -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추진의사는 긍정적임
전라북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진행하였던 사업을 이미 완전 정리한 상태임. 운영비용 지원이 관건임.
전라남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다가 운영지원중단으로 사업이 정지된 상황임. - 지원만 있다면 추진할 계획임.
경상북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5년도 수요조사에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함. -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함. - 예산에서 국비보조 비율을 높여주면 좋겠음.
경상남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계속 줄고 있어 수요가 없음. -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봄
제주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주지역에서 거점지역 중심으로 장난감과 출산용품 대여 사업이 있음. -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점지역보다는 이동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훨씬 활용도가 있을 것임. -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정이 있어야 함.

◎: 매우 큼 ○: 큼 △: 필요는 하나 실제 추진은 어려움. ×: 없음 -: 무응답

2)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의견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총 441개 면 지역 중 주민등록인구상 어린이집 주 수요층인 만 2~4세 인구 합계가 총 20명 이상인 262개 면 중, 지리상 인근에 읍이 없고 무보육시설 면이 2개 이상 연결된 36개 읍·면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보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놀이버스 사업의 향후 수요를 살펴보기 위해 이미 간담회 실시를 통해 수요

와 사업재개 의지를 확인한 전남지역을 제외한 21개 지역의 보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사업이 해당지역에서 실시된다면 주민들의 수요 및 호응도가 어떨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2-4>에 나타난 보육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향후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이 실시될 경우 주민들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2011년 보건복지부에 동 사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였다 반납한 경험이 있는 경상북도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서의 사업 수요는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 사업을 신청했다가 반납했던 경상북도의 경우 운영주체를 어디로 해야 할지가 가장 문제였으며, 실제 아동이 거주하는 곳까지 버스가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외진 곳이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상북도 보육 담당 공무원들은 이동식 놀이버스의 가장 큰 장점인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제 아동이 거주하는 면지역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본 사업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 주민등록인구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사업을 전망할 때 주민등록인구로 수요를 파악해 서는 오류가 많을 수 있음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 영유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이 많고,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비로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안 되어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III-2-4>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 2(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보육 공무원 대상)

시도	읍면	사업 수요	비고
인천	덕적면(옹진군)	-	
강원도	김삿갓면, 상동읍(영월군)	×	2년 전부터 8개 지역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사업은 필요치 않음.
충청 북도	청성면(옥천군)	-	
	양산면(영동군)	△	필요하나 사업을 주관할 기관이 없음. 이동식보다 먼저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시도	읍면	사업 수요	비고
충청 남도	장평면(청양군)	△	필요하긴 하나 면단위에 아동이 적어 버스가 들어올 사업성이 있는지 의문임
	서부면(홍성군)	-	-
	광시면(예산군)	-	-
전라 북도	망성면(의산시)	○	평소 장난감, 도서 등이 넉넉지 않아 주민 수요가 있을 듯.
	산내면(정읍시)	○	주민 호응은 좋을 듯함.
	공덕면(김제시)	○	접근성이 좋아 좋을 듯.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진안군)	○	수요 및 주민 호응이 있을 듯함. 특히 장난감에 대한 수요가 많을 듯함.
	계북면(장수군)	-	잘 모름
	신덕면, 강진면, 덕치면(임실군)	○	-
	심원면(고창군)	△	필요는 하나, 농업종사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할 때 특정 시간에 모이기 어려울 듯.
	부항면, 대덕면(김천시)	×	2011년에 신청했다 반납.
경상 북도	구천면, 단밀면(의성군)	△	소형버스로 아이들 거주 지역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함.
	소천면(봉화군)	△	면단위로 차량이 다닐 수 있어야 함
	욕지만, 한산면 (통영시)	×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경상 남도	가례면(의령군)	△	지원되면 좋으나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녀 필요성은 크지 않음
	이방면(창녕군)	×	놀잇감 이용 주수요층인 만 3세 이상이 실제로 별로 없음
	영오면(고성군)	×	영오면은 아동 수가 적어 필요 없고, 아동 수가 많은 읍지역은 어린이집이 많아 다른 보육서비스가 필요 없음

○:높음 △: 조금 있음 ×: 없음 -: 무응답

3)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의견

사업 도입 시 사업을 위탁해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해서도 지역 수요 및 사업 운영 의향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대부분 이동식 놀이교실에 대한 주민 수요와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산은 없어, 사업비만 지원된다면 사업을 맡아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오지가 많아 이러한 이동식 대여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이동식 놀이교실 지역별 수요 3(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사업 수요	사업추진 의향	비고
경기도	◎	○	- 경기도에 소외지역이 있어 필요함. 이전에 예산 문제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강원도	◎	○	- 강원도 내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많음. 놀잇감 보관 장소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웠음. - 예산과 놀잇감 등 장소 부족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함.
충청북도	○	○	- 현재 자체 놀잇감 대여 사업인 '놀이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홍보만 잘 되면, 놀잇감 회전이나 운영 시스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됨.
충청남도	◎	○	- 충남지역에 오지가 많아 이동식으로 대여사업을 실시하면 호응이 있을 것임. -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운영 의향은 충분함.
전라북도	○	○	-
전라남도	○	○	-
경상북도	◎	○	- 도서 벽지가 많아 너무나 필요한 사업임. - 예산만 지원된다면 할 의향이 있음.
경상남도	○	○	- 사업의 필요성은 있음. - 기존 지원금 수준은 운영 예산 정도인 것 같음. - 초기 설치비 지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음.
제주도	○	△	- 농촌지역은 혜택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필요함. - 현재 소규모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이 진행된다면 장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현재 센터를 이전해야 하나 이전 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필요함.

◎: 매우 큼 ○: 있음 △: 필요는 있으나 실제 추진은 어려움.

이동식 놀이교실에 대한 수요를 각 시·도의 보육담당 공무원, 농업담당 공무원 중 소규모 보육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 향후 사업위탁운영자가 될 가능성성이 높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각각 물어본 결과 이들이 다소 다른 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수요를 다소 보수적인 측면에서 전망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 진행 시 예산 부담과 이에 따른 이용자 수 등 수치로 나타나야 하는 '실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예산 부담 문제와 예산 투입에 따른 눈에 보이는 효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운영자가 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이보다는 이용자의 '욕구' 층족에 주안점을 두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식 놀이교실이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더욱 오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어촌 대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의 특성 상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떠한 보육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도서, 벽지의 아동과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해 수요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 사업

가. 사업 취지 및 지원 내용⁶⁾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손이 바쁜 농번기 주말에도 유아를 맡기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⁷⁾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농촌(읍·면) 지역 중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단체(여성농업인센터, 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를 법적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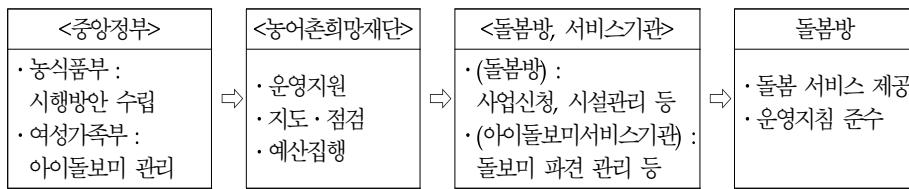
농번기 주말 돌봄방에서는 부모가 농업인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 기간 중 4개월을 선택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또는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을 돌보미로 활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5).

지원체계는 아래 [그림 III-3-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사업의 시행방

6)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 시행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7) 농번기 주말 돌봄방 : 놀이방 등 일정공간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유아를 돌보는 시설(10인 이하)

안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를 관리한다. 또한,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개소 당 최대 34백만원까지 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014년 5월 22일 보도자료), p 4.

[그림 III-3-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체계

지원 내용은 시설개보수비를 2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14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개보수비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기자재 및 장비를 포함하여 사용가능하고 운영비는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 돌보미 인건비 및 교통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를 포함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안)은 다음 <표 III-3-1>과 같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농촌지역 농번기에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42.9m² 이내로 설치하고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은 주말에 각각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대상은 만 3 ~ 5세의 유아이다.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 보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여 돌보미 1인당 유아 5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유아교육 보조 인력은 인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유아를 입소 우선순위 1 순위로 하고 농번기 주말 돌봄방 소재 지역 비농업인 유아도 2순위이다. 이용 유아가 5인 이내인 경우 시설장 1인과 취사부 1인, 돌보미 1인 또는 유아교육보조인력 1인을 배치하고 유아가 5인 이상 10인 이내인 경우 시설장 1인과 취사부 1인, 돌보미 2인 또는 유아교육보조인력 2인을 배치한다.

〈표 III-3-1〉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안)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 시설규모 : 42.9m ² 이내(상시 유아 3~1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설치지역 :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돌봄방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시설 운영
○ 돌봄 시간
- 주말(토, 일)에 각각 8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돌봄방 명칭 : 「○○○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라 함
○ 보육대상 : 만 3세~만 5세의 유아
○ 돌봄방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시행
○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거나, 보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한 지역주민을 채용, 돌보미 1인당 유아 5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
○ 유아교육 보조 인력은 인근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육 프로그램 진행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유아(만3~5세)
- 2순위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소재 지역 비농업인 유아(만3~5세)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아래의 차순별 선정하되, 부족한 경우 2순위 적용
· 1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유아,
· 2차 : 차상위 계층,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유아
· 3차 : 기타 일반 유아
○ 종사자 배치기준
- 유아 5인 이내 : 시설장 1인, 취사부 1인, 돌보미 1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1인
- 유아 5인 이상 10인 이내 : 시설장 1인, 취사부 1인, 돌보미 2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2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 시행안내, p7.

올해 시범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특성을 반영한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인센터형, 지역농협형, 일반형 등

운영주체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다음의 <표 III-3-2>와 같이 여성농업인센터 5개소, 지역농협 3개소, YMCA 1개소 등 9개소를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5). 선정 기관을 운영모델별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 III-3-3>와 같이 어린이집 시설 활용형이 5개소, 지역농협과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이 1개소, 농협 추진형이 2개소, 방과후 활동 시설 활용형이 1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3-2> 운영주체별 유형

구분	지역명
여성농업인센터형(5개)	전북(부안군 하서면, 고창군 아산면), 전남(나주시 동수동), 경남(함안군 군북면), 제주(제주시 애월읍)
지역농협형(3개)	전북(완주군 고산면), 전남(고흥군 도양읍), 경북(문경시 산북면)
일반형(1개)	경북(경주시 현곡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014년 5월 22일 보도자료), p 5.

<표 III-3-3> 운영모델별 유형

구분	운영주체 및 지역명
어린이집 시설 활용형(5개)	부안 · 고창 · 나주 · 함안여성농업인센터 및 경주YMCA 전북(부안군 하서면, 고창군 아산면), 전남(나주시 동수동), 경남(함안군 군북면), 경북(경주시 현곡면)
지역농협과 지역아동센터 연계형(1개)	농동농협 전남(고흥군 도양읍)
농협 추진형 (2개)	고산 · 산동농협 전북(완주군 고산면), 경북(문경시 산북면)
방과후 활동 시설 활용형 (1개)	애월여성농업인센터 제주(제주시 애월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2014년 5월 22일 보도자료), p 5.

나.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014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전국 9군데 주말돌봄방 사업 운영 시설에 대해 2014년 11월 초 1주간 실시된 운영현황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이나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요구 사항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1) 운영 인력

주말돌봄방의 주요 인력으로는 시설장과 돌보미를 들 수 있다. 시설장의 경우 총 9명 중 연령은 30대 2명, 40대 4명, 50대 3명으로 평균 40대 후반 정도로 볼 수 있고, 학력은 전문대출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졸이상이 3명이었다. 관련 경력은 5년 이하가 2명, 5-10년이 2명, 10년 이상이 4명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돌보미는 총 18명으로 각 시설당 대부분 2명이었으나 전북 고창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 애월은 1명이었다. 연령은 20대가 3명, 30대 3명, 40대 9명, 50대 3명으로 40대 이상이 70%가량을 차지했다. 학력은 대부분 전문대출 이상이었으나 3명은 고졸이었으며, 1일 근무시간은 평균 8.6시간이었다. 최대 10시간을 근무하는 곳으로는 경남 함안여성농업인센터, 전남 나주여성농업인센터가 있었다.

〈표 III-3-4〉 주말돌봄방 시설장 및 돌보미 현황

단위: 세, 년, 명

지역	시설명	시설장			돌보미				
		연령	학력	경력	인원	연령	학력	경력	1일 근무 시간
경북	경주 YMCA	51	대학원졸	9년 8개월	2	47 47	대출 대출	3개월 3개월	8 8
	산동농협	32	전문대	10년	2	55 56	- -	5년 5년	9 9
경남	함안여성 농업인센터	41	전문대	7년 3개월	2	29 28	전문대 대출	4년 3년	10 10
전북	고산농협	33	전문대	-	2	31 40	대출 대출	- -	8 8
	고창여성 농업인센터	47	대출	13년	3	43 29 43	전문대 전문대 고졸	0 4년 4년	9 9 9
	부안여성 농업인센터	48	대출	21년 7개월	2	47 44	전문대 고졸	- -	9 9
전남	녹동농협	57	전문대	4년 10개월	2	56 37	고졸 대출	4개월 4개월	9 9
	나주여성 농업인센터	44	전문대	4년	2	49 39	대출 대재	24년 4년	10 10
제주	애월여성 농업인센터	57	전문대	15년	1	45	전문대	23년	9

주말돌봄방의 돌보미 외 직원으로는 대부분이 취사부, 보조 인력이었다. 모든 지역에 취사부는 배치되어 있었으며, 보조 인력이 있는 곳은 경북 경주 YMCA, 산동농협, 전남 나주여성농업인센터 3곳이었다. 경주 YMCA에서는 취사부가 8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취사부가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보조 인력은 경주 YMCA가 8시간, 산동농협이 9시간, 나주농업인센터가 4시간 근무하고 있었다. 기타인력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졸까지 다양하였다.

〈표 III-3-5〉 주말돌봄방 기타직원

지역	시설명	인력구성	연령	학력	경력	1일
						근무시간
경북	경주 YMCA	취사부	52	전문대	3개월	8
		보조인력	44	대졸	3개월	8
	산동농협	취사부	46	-	4년	4
		보조인력	32	-	-	9
경남	함안여성 농업인센터	취사부	54	고졸	4개월	4
전북	고산농협	취사부	69	고졸	-	5
	고창여성 농업인센터	취사부	39	고졸	1년	-
	부안여성 농업인센터	취사부	63	초졸	-	4
전남	녹동농협	취사부	51	중퇴	4개월	5
	나주여성 농업인센터	취사부	49	대졸	4개월	4
		보조인력	41	대졸	1개월	4
제주	애월여성 농업인센터	취사부	70	-	-	2
	보조인력	43	대졸	23년	-	4

2) 이용 아동

주말돌봄방 이용 아동은 전국 총 108명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산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 아동 수를 보였고 제주 애월이 1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4세와 만5세가 많았으며, 기타로는 영유아 동생을 따라 온 초등학생이 있었다. 이용가구 특성은 농업인가구가 68가구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도 14가구로 주말돌봄방을 이용하는 비농업인 가구도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주말돌봄방 아동 현황 및 이용가구 특성

단위: 명, 가구

지역	시설명	이용 아동					이용가구 특성	
		현원	연령별				농업인 가구	비농업인 가구
경북	경주 YMCA		만3세	만4세	만5세	기타		
	산동농협	10	1	4	5	0	10	0
경남	함안여성 농업인센터	11	4	1	2	4	7	2
전북	고산농협	17	4	4	8	1	7	0
	고창여성 농업인센터	11	2	4	1	4	7	0
전남	부안여성 농업인센터	12	3	4	4	1	7	3
	녹동농협	10	2	2	4	2	6	4
제주	나주여성 농업인센터	10	1	3	6	0	8	0
제주	애월여성 농업인센터	16	3	6	5	2	5	5
(총 9개) 계		108	24	38	42	16	68	14

3)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형태는, 대부분이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제일 일찍 시작하는 곳은 함안여성농업인센터, 고창여성농업인센터, 녹동농협으로 오전 8:00시에 시작하였다. 가장 늦게 종료하는 곳은 함안여성농업인센터 18:20분, 나주여성농업인센터 18:30분이었다.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운영기간은 다양하였으며, 사업개시일도 5월부터 시작하는 곳이 3개소, 6월부터 시작하는 곳은 2개소, 7월은 2개소, 8월에 시작하는 곳은 2개소이었다. 사업종료는 대부분 10월, 11월이었으며,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는 9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각 시설장이 주말돌봄방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 11월에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곳이 4개소, 3월에 시작해서 6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지역은 고창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이었다. 5, 6월에 시작해서 10, 11월에 종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개소이었다. 함안여성농업인센터는 9월에 시작하여 익년도 6월까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지역마다 수요

가 있는 시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I-3-7〉 주말돌봄방 운영형태

지역	시설명	일과 시간		운영기간		주말돌봄방 필요시기	
		시작	종료	사업	사업	개시	종료
경북	경주 YMCA	9:00	17:00	8월	11월	4월	11월
	산동농협	8:30	17:00	7월	10월	4월	11월
경남	함안여성농업인센터	8:00	18:20	5월	11월	9월	6월
	고산농협	9:00	17:00	8월	11월	5월	11월
전북	고창여성농업인센터	8:00	18:00	5월	11월	3월	6월
	부안여성농업인센터	9:00	18:00	5월	11월	4월	11월
전남	녹동농협	8:00	18:00	7월	11월	4월	10월
	나주여성농업인센터	8:30	18:30	6월	11월	5월	11월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8:40	18:00	6월	9월	6월	12월

4) 건물형태 및 이용자 시간 연장 요구

주말돌봄방 입주형태는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3개소였다. 이용시간에 대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안여성농업인센터를 제외하고는 연장요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남 부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요구가 있음에도 연장이 어려운 이유는 추가 시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과 아이돌보미 근무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3-8〉 이용 건물 형태 및 이용시간 연장 요구 여부

지역	시설명	입주형태	이용시간 연장 요구
경북	경주 YMCA	단독건물사용	없음
	산동농협	건물의 일부	없음
전북	함안여성농업인센터	단독건물사용	없음
	고산농협	건물의 일부	없음
	고창여성농업인센터	단독건물사용	없음
전남	부안여성농업인센터	단독건물사용	있음
	녹동농협	건물의 일부	없음
제주	나주여성농업인센터	단독건물사용	없음
	애월여성농업인센터	단독건물사용	없음

※ 연장시 예상 어려움: 추가 시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 아이돌보미 근무시간 연장의 어려움

5) 운영체의 지원 현황

현재 운영주체측이 주말돌봄방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간제공이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교재교구 제공 5개소, 프로그램 제공 3개소 순이었다. 특히 경주 YMCA에서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제공, 공간제공, 환경조성 지원, 교재교구 제공 등 가장 많은 운영지원을 받고 있었다. 반면, 전남 녹동농협은 운영지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함안여성농업인센터는 공간제공만을, 고산농협은 환경조성지원(내부 공사, 시설·설비 구축 등)만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I-3-9〉 운영지원(복수응답)

지역	시설명	인간 비외 지원	인간 비외 운영 지원	인력 지원	프로 그램 제공	공간 제공	환경 조성 지원	교재교 구제공	기타	지원 없음
	전체	1	2	2	3	6	4	5	1	1
경북	경주 YMCA	x	x	O	O	O	O	O	O	x
	산동농협	x	O	O	O	O	x	O	x	x
경남	함안여성농업인센터	x	x	x	x	O	x	x	x	x
전북	고산농협	x	x	x	x	x	O	x	x	x
	고창여성농업인센터	x	x	x	x	O	O	O	x	x
	부안여성농업인센터	x	x	x	O	O	x	O	x	x
전남	녹동농협	x	x	x	x	x	x	x	x	O
	나주여성농업인센터	x	x	x	x	O	x	O	x	x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O	O	x	x	x	O	x	x	x

6) 운영상 어려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운영비 부족, 시설설비 불충분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1-2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말돌봄방 운영이 어려운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어려운 편은 2개소, 보통이 2개소, 어렵지 않은 편 2개소, 어려움이 없다는 곳이 3개소이었다. 어렵다고 응답한 곳은 경주 YMCA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창여성농업인센터는 인력채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III-3-10〉 현재 전반적 운영상 어려움 및 내용

지역	시설명	어려운 점 (복수응답)					전반적 어려운 정도
		운영 인력채용 어려움	지역 호응	주민 부족	운영비 부족	시설설비 불충분	
	전체	5	1	3	2		
경북	경주 YMCA	x	x	O	x	어려운 편 보통	
	산동농협	O	x	O	O		
경남	합안여성농업인센터	O	x	x	x	어렵지 않은 편	
전북	고산농협	x	x	x	O	보통	
	고창여성농업인센터	O	x	x	x		어려운 편
	부안여성농업인센터	x	x	x	x	어려움 없음	
전남	녹동농협	x	x	O	x	어렵지 않은 편	
	나주여성농업인센터	O	x	x	x	어려움 없음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O	O	x	x	어려움 없음	

주말돌봄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운영시간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인원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농촌지역이라 원거리 운행이 불편하고, 운전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점, 돌보미, 취사부 등 인력수급의 어려움, 정식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이 아니어서 아동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없는 점 등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⁸⁾.

앞으로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연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돌보미 인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수급할 수 있도록 자격완화,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 확대, 프로그램 및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II-3-11〉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 및 개선 의견

지역	시설명	어려운 점	개선의견
경북	경주 YMCA	- 한정 사업이라 수요만큼 인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	- 지속적 상시사업으로 전환필요 - 노동부 산정 주말 인력사용비에 비해 인건비 부족하게 책정됨

8) 전북 완주나 경북 문경 등 농협에서 주관하는 시설의 경우 농협을 통해 아동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시설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도 불가능하고 어린이집이 아니어서 단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였다.

지역	시설명	어려운 점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역은 도농상생 지역으로 원거리 분포된 지역이라 이동차량 지원이 없으면 수용인원 제한적임
	산동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단위라 원거리로 인한 운행 불편 - 운전사 인건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필요
경남	함안여성 농업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 수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 인력을 지역거주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해야 함 - 기존 어린이집 주말 사용시 냉·난방비 산정 어려움 있음 - 지역특성상 1년 내내 농번기(하우스 또는 낙농)인 경우도 고려해야 함
	고산농협	-	-
전북	고창여성 농업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를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 자격이 보육교사로 상향되어 아이들 안전과 보육의 질 고려되어야 함 - 농민들 위한 문화와 환경조성 필요 - 돌봄아동수 늘어남에 따라 시설장, 취사부 근무시간도 늘어나야 함
	부안여성 농업인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영아 만2세에서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 필요, 초등 프로그램 필요 - 교재교구와 프로그램이 대상 확대에 맞추어 지원 필요 - 장애아동 있는 경우 돌보미 수를 늘려주는 등 개선 필요
전남	녹동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이 아닌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만 운영되므로 돌보미 채용불안정 - 돌봄이 필요한 환경의 유아들을 위해 농번기 제한 두지 않고 운영 필요
	나주여성 농업인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2세-초등2까지 대상 확대 필요(형제가 같이 동행하는 경우 많음)
제주	애월여성 농업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인력 수급 어려움 - 아동에 대한 상해, 재해 보험 가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으로 확대해야 함- - 농어촌 특성상 영세상인이 많음으로 간식비 현금으로 쓸수 있도록 혜용 필요

7) 사업지속 필요성

주말돌봄방의 향후 전망을 질문한 결과, 경주 YMCA, 부안여성농업인센터, 녹동농협, 애월여성농업인센터는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

망을 하였다. 나머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곳 중 인근지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은 경주 YMCA,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애월여성농업인센터 3곳이었다. 2015년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창여성농업인센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3-12〉 주말돌봄방 향후 전망 및 사업지속 여부

지역	시설명	주말돌봄방 향후 전망	인근지역 확장 필요함	2015년 사업 지속함
경북	경주 YMCA	지속적 수요 증가	필요함	O
	산동농협	현상태유지	-	O
경남	함안여성농업인센터	현상태유지	-	O
	고산농협	현상태유지	-	O
전북	고창여성농업인센터	현상태유지	-	x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지속적 수요 증가	필요함	O
전남	녹동농협	지속적 수요 증가	필요 없음	O
	나주여성농업인센터	현상태유지	-	O
제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지속적 수요 증가	필요함	O

다. 향후 수요 전망

지자체의 사업 주무 부서인 농정과 담당자와 보육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의 향후 수요를 파악하였다. 농촌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의 경우 바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주말동안 유아를 돌보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수요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바쁜 농번기에 주말 돌봄 수요는 있으나 이미 기존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수요를 파악할 수 없어 향후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의 혜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부모와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촌도 예전과 다르게 주말에는 쉬는 경우가 많으나, 소득이 낮은 경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농번기 돌봄지원은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 돌봄 차원이 아닌 특수 프로그램 교육 등 특성화가 필요함.(경상도 지역 간담회, 2014년 5월 28일)

아이돌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휴일보육도 할 수 있음. 2년 전부터 8개 지역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또 다른 사업은 필요치 않음.(강원도 영월군)

농번기 주말 돌봄지원 등 사업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농번기에 4개 월 동안 유아 돌봄방을 운영하는 것 보단 농번기 아침·저녁시간 인건비 지원으로 시간 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임.(경상도 지역 간담회, 2014년 5월 28일)

이처럼 다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향후 수요에 부정적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등의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부족하다고 보는 지자체는 이러한 수요 현황을 볼 때 바쁜 농번기에 주말동안 돌봄방을 운영하는 시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에 대한 수요 또한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요는 있을 것임. 현재 고창군내 1군데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들었음. 고창읍에서 먼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 원하는 수요가 있을 것임.(전라북도 고창군)

공문을 보고 주말 시설을 모두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그러므로 기존의 어린이집이 휴일보육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실제 휴일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관내에 없음. 필요성은 있어 보임. (충청남도 예산)

읍지역이 아닌 면에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봄. 그러나 어린 애기의 엄마들은 농가이더라도 농사일을 않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수요는 파악이 어려움. (충청북도 영동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 중 하나인 휴일 보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3-13>와 같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의 휴일 보육 현황은 전국에 269개 어린이집에서 휴일보육을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아동

도 전국으로 489명에 불과하다. 휴일보육 현황이 시·도 단위로 집계되어 시·군·구 지자체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휴일 보육 아동수는 361명이고, 충북/충남/경북/경남 지역에는 이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0명으로 나타나 휴일 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군 단위 지자체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 지역의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당직교사만 출근하여 어린이집을 열어만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실제 이용하는 아동 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농번기 주말에 돌봄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13〉 휴일 보육 어린이집 현황

구분	어린이집수	보육아동		
		정원	현원	휴일 현원
계	269	20,397	17,442	489
서울	92	6,438	5,971	81
부산	3	258	245	1
대구	0	0	0	0
인천	1	39	39	5
광주	7	636	416	41
대전	2	394	349	0
울산	24	1,831	1,754	0
세종	0	0	0	0
경기	17	1,384	1,348	5
강원	10	1,002	799	38
충북	3	243	173	0
충남	7	581	404	0
전북	4	492	347	33
전남	7	677	567	23
경북	2	249	190	0
경남	19	1,430	1,239	0
제주	71	4,743	3,601	262

자료: 보건복지부(2013a). 보육통계(2013.12.31.기준)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이면 이후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번기 주말돌봄방은 요구가

있는 지역에 적절한 시기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농촌 보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호한 프로그램의 개발, 믿을 수 있는 보육도우미의 공급 등 몇몇 사안들은 중요하게 관리되고 짚어져야 한다.

IV.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 시설 운영 모델 개선

본 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사업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운영 지원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그 기능을 확대하여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돌봄센터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면서 신규 시설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 운영개선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인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기존의 농촌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이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사업 명칭을 전환하였으나 설치 운영을 위한 지침에는 시설의 명칭은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명칭을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해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 가정에서 혼동이 없을 것이고 실제로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받는 것과 동일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명과 달리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일반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각각이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다른 재정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를 받는다는 행정적 차이 외에 상호 다른 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가 20인 이하로 정원을 규정해 두고 있는 규모 기준에서의 차이일 것이다. 이는 센터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은 설립을 위한 최하 기준이 11명이다. 11명 이하 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쇄될 수도 있지만 센터는 3명 이상이면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아동 수가 줄어드는 농촌의 상황을 접목하여 생각하면 지역에 따라서 소규모어린이집인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20명에 가까울 때에는 설치가 유용하지만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실제 3명에 가까울 때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초기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도입했을 때의 의도는 어린이집이 없는 도서, 벽지, 산간지역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멀리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집 가까이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때 영유아 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3명 이상이면 어디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구상하였다(김은설 외, 2010).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 유숙건물이 있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을 찾고, 가능한 한 여러 마을(행정 리)에서 아이들을 모아 보육할 수 있는 20명 정원의 시설을 세우고자 하다 보니 대부분 면소재지내 보건소나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가까이에 설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면소재지는 어린이집은 없더라도 대부분 병설 유치원이 있어 영유아 유치 경쟁 등으로 갈등이 조장될 가망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면내 여러 마을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높게 느껴 이용이 용이할 수 있고 더 작은 규모의 시설보다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있어 교육의 효과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초기 의도와는 달라졌지만 정규 국공립보육시설로서 인정되기에 손색이 없으므로 그야말로 규모만 작은, 농촌의 어린이집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보육에서 소외되는 거리상 외딴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접근성이 해결이 되었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둘째, 운영비 지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이는 소규모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센터들이 이러한 지원에 대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항목과 방식에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농촌아이돌봄센터의 특성과 더불어 제기된 논의점들은 농촌의 구조·환경적 문제, 센터의 인력 조달과 인건비 문제, 운영비 지원의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모델의 확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의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에서, 여러 군의 보육 담당자들은 현재 아동이 어린이집 미설치 면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매우 적으며 향후의 수요를 짐작해보면 장기적 시각에서 설치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즉, 현재 필요 영유아 수가 적고 이들이 차량을 오래 타더라도 이웃 읍·면으로 다니고 있으므로 당장 설치가 요구되지 않고 향후를 전망하더라도 아동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시설을 세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가 많다보니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 수요는 낮고 필요성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면 설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센터가 어린이집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위의 의견이 정확할 수 있으나, 센터를 아이들이 차량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3명 정도의 소수일지라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부모가 있다면 그 수요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함으로써 센터의 특성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터를 본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시설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소규모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융통적이고 유동적인 시설이 되어 설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시설을 설치하되 사업 유지 기간을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을 계획하여 조립식 또는 이동이 쉽게 가능한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수요 전망을 장기적으로 잡지 않고 현재 수요를 담당하고 현재 시점의 영유아가 모두 초등학생으로 성장한 이후 수요가 없어지면 시설도 폐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을 포함하여, 다음에서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새로운 접근으로 시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일반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첫째는 현재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의 형태 그대로의 유형이며 설치나 운영 기준에서 차이가 없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 읍·면의 영유아가 차량으로 이동하여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주로 소재하고 공공건물 리모델링 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예산 하의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이동주택식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

두 번째의 모형은 도서·산간·벽지에 분원식으로 운영하는 '이동주택식(예. 컨테이너주택, 조립식주택)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으로, 기준과의 차이점은 읍면 소재지에 설치용이 아니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5~7명 정도로 '소수로 있는 지역으로 찾아들어가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벽지 마을에 보육 수요가 있다면 이 경우는 기존에 공공시설이 없어 시설 리모델링후 설치가 불가능하고 영구 시설 신축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기존 소규모국공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치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산간벽지에 영아 보육의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는 차량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초기 설치비용이 비교적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고 영구 설치해야할 부담이 없는 이동주택식 모델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분원 어린이집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경우 보육사업 기간을 단기로 전망하면 센터장과 교사 등 인력의 근무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분원의 형태로 원장을 따로 두지 않고 분원 책임 교사를 두어 소속은 본원으로 하면서 순환 근무를 하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설치 규정은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아동당 4.29m^2 면적 기준과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만일 5명의 아동이 있을 경우 21.45m^2 연면적 이어야 하며 이 규모는 현 시세 기준 20,000천원 가량 설치비가 필요하다. 물론 건물 설치를 위한 제반 설비가 요구되나 대지, 기본 설비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과의 협조, 대지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될 필요는 있다. 현행 법상 "컨테이너하우스는 빈 대지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만 별도로 매매하기도 하며,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서울경제, 2014년 7월 24일자 기사 인용). 초기 비용이 투입되지만 이후 수요가 없어졌을 때 철거하여 타 지역에 재설치가 가능한 재활용의 장점이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지역에 직접 설치되므로 차량에 대한 지원비가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3년 한시적 이용이 하가되며(주. 그러나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

능하다), 「건축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 지자체장에게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가설건축물이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어린이집 구조와 안전 등 일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허가했을 때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성이나 환경수준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농촌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만 수용될 수 있는 방편임을 인정한다면 효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다.

3) 가정돌봄센터

마지막 세 번째 모형으로, 상황에 따라 도서나 산간벽지의 경우 교사 파견이 어렵다면 인근 지역 주민 등 가능한 인력을 활용한 아이돌보미를 두고 영아 중심 보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돌봄센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호주의 가정보육(Family daycare)으로부터 벤치마킹하는 모델로,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자 하는 아이돌보미 자격자(혹은 보육교사) 가정을 보육서비스 제공지로 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 또는 보육교사는 자신의 영유아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동시에 돌볼 수 있다. 총 영유아 인원 6명을 넘지 않고 주로 영아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기관 유형이다. 이 때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시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해야 한다. 해당 지역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타 가정 영유아를 함께 돌보면서 돌보미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대 2명의 돌보미가 한 센터에서 최대 6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고, 필요시 취사부 또는 보조인력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유형은 아이돌보미 1명이 최대 3명의 영아(상황에 따라 유아 가능)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형태이다. 원칙적으로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차량에 대한 지원 또한 없다. 가정집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형태이므로, 필요한 기자재, 교재교구가 제공되고 주 1회 이상 이동식 놀이버스가 방문하여 필요한 장난감, 교재교구 대여,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 참여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계될 수 있다.

근로 조건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아이돌보미와는 다른 기준에서 인건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수준을 고려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돌봄 비용 책정 또한 필요하다. 적정 지역과 돌보미, 돌봄센터를 선택하는 것은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기초지자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가 되면, 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 IV-1-1]은 이제까지 제시한 3가지 유형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보여준다.



[그림 IV-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다양한 유형

나. 현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

1) 인력 지원의 개선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평균 교사 수는 2.3명으로, 대부분 2명의 교사가 있으나 겹임 원장이 8명이어서 실제 필요한 교사 수는 대부분 3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 1명, 교사 2명, 취사부 1명, 그리고 다수의 경우 운전원 1명으로 평균 인력이 구성되었다. 이들 인원으로는 연장보육이나 토요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농촌의 경우 교사 대체 인력 활용도 쉽지가 않다.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보면, 1) 교사 겸임 원장의 업무가 너무 많음(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2) 유동적인 아동 수 변동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달라져 인건비가 불안정하므로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율 30%, 8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함, 3)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지원함, 4) 동승자로서 교사가 등하원 차량에 타는 경우 인력 부족으로 상황이 힘듦으로 차량동승도우미 인력이 있었으면 함 등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참고하면서, 인력 문제와 관련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조인력(보육도우미) 활용 지원

첫째,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원장의 사무 보조 업무자로 또는 차량동승도우미로, 혹은 교사가 동승할 경우는 시설에 남아 교사 대체인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중 충남 공주 시설은 지자체로부터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충북 괴산은 '누리과정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보조인력 이용은 인력규모가 작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보육도우미'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을 제도화한 사업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각종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형태이다. 그러나 누리과정보조는 누리과정을 하는 3-5세 유아가 어느 정도 수를 유지하면서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농촌 소규모 시설은 이 제도의 활용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동 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달라 소수의 유아만으로 누리과정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담당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인력은 어린이집에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보조 인력이 될 수 있다. 현재 아이돌보미 인건비는 시간당 7,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저소득 가정에 파견될 시에는 정부가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아이돌보미가 기관에도 파견이 가능하므로 이들을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일 2~3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현재 8시간 운영을 일반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12시간에 가깝게 확대하면서 교사의 초과 근무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취사부가 차량동승 도우미를 겸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 도우미수당 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취사부가 여의치 않으면 학부모 봉사 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도우미를 임명하여 시간당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취사부, 학부모는 차량도우미 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나) 인건비 지원 규정의 완화

인건비 전액 지원이 요구되지만 만일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할 때 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인건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

시설장 인건비는 농촌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 아동 수 11명 이상일 때 80%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평균 13명 정도임(본 보고서 p.37)을 보면 11명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소규모어린이집의 정의가 3명 이상 20명 이하 규모의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3명 또는 정원의 1/3 정도인 7명 이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인력으로 평가인증 준비에 에너지를 쏟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평가인증통과라는 조건을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다) 시간연장 근무 수당 지원

농번기 등 운영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 교사의 8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 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농번기 등에 연장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교사가 없어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 교대 인력이나 아이돌보미 등 보조 인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당 지원을 통해 교사 연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

마지막으로,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센터마다 차량운영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월 일정액 지원이 있다면 겸임 원장이 운전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은 줄어질 것이다. 이는 차량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2) 운영비 지원 방식의 개선

첫째, 냉·난방비 지원에서,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에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냉방비는 월 최대 150천원, 난방비는 월 최대 250천원으로 차 이를 두어 지원 총액은 변함이 없더라도 계절에 따른 지원 차를 두도록 한다. 특히 지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식도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보육교직원 자기계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에서, 조리원의 경우 자기계발비 보다는 교통비 지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으므로, 보육교사 자기계발비와 보육교직원 교통비로 지원 명목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봄 직하다.

셋째, 공공건물을 시급하게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보니 실제 운영하면서 구조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피시설미흡, 교사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에 대해 개·보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실태조사를 보면, 실외 놀이공간이 부족하고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즉, 개원 후 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 물리적 환경 개선비로 일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3) 운영 개선을 위한 기타 제언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오전 진행 허용

일부 소규모 어린이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개발비로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과 연계하여 특별활동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사가 유치원에서는 오후 동안만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므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에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농촌의 경우 평가인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허용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나) 어린이집 내 시간제 보육의 실시

농촌 가구에는 고령 인력 등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다른 말로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일반적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다른 기준에서,

시간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센터의 입장에서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수 등 현 규정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사가 추가적 부담으로 힘들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다양한 인력의 활용과 지속적 아동 수 부족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 발달 문제 아동을 위한 지역 연계 지원 활성화

발달문제나 주의력 산만 아동을 위한 작업 치료 등에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전문가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아이에 대한 진단, 교사에 대한 지지, 관련 부모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전업농업인의 맞벌이 인정

농업 가정이 맞벌이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보육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전문가로 하여금 농사의 종류, 농지 면적, 가구내 농업 가능 인력 등 몇 가지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농업 가정의 경우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자체 업무 부서간 협의 강화

조사 결과를 보면, 농정업무 부서와 보육담당 부서간 업무 장벽으로 인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적극적 사업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개 군 보육담당자와의 전화 조사에서 6명은 농림부의 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궁금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2명은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농림부서 담당자와 협의해 본 적은 없다고 하였다. 즉 상당수의 보육 담당자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이동식 놀이교실

가) 사업의 안정성 제고: 예산 및 사업 지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이동식 놀이교실(놀이 버스) 사업은 사업당 130백만원이 지원되고 국고보조율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작은 사업이나, 지방비 30%의 부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자체 예산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청이나 위탁업체가 부담을 느껴 새로이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운영하고 있는 자자체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서문희·도남희·송신영, 2011: 21). 이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예산 부담뿐 아니라 사업 지원이 1년 단위로 매년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관련 인력 고용도 불안정하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 사업 운영자 및 이용 부모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사업의 확장과 발전의 걸림돌임이 제기되었다(2014년 7월 간담회 내용 발췌).

또한 매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익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사업지속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상반기 몇 개월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휴지기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익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이 9월중에 이루어지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확정 사업량을 각 시·도에 통보하는 것이 12월에서 익년도 1월중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은 사업년도 2월 중에 이루어져서, 실제 사업 개시는 3월에나 가능한 표준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그런데, 1~2월에 해당하는 이러한 휴지기는 사실상 농한기에 해당하며 영유아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도서와 장난감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는 시기이다. 즉,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가장 수요가 높을 수 있는 시기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확대·발전을 통해 더 많은 농어촌 주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 계획을 가진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전라남도의 서부지역에 국한해 제공하였는데, 그 외 지역에서의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향후 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예산 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과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서비스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사업주체의 다양화 추진: 유사 사업주체의 장단점 비교를 통한 위탁체 다양화
 한편, 최근까지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곳은 전남과 전북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하면 각 시도마다 1~2개소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농촌과는 접근성에서 거리가 있다. 면적이 넓은 도지역에서 센터가 1개소만 있거나 그 또한 여의치 않은 곳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이 이동식 놀이교실의 주 시행체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농어촌과의 접근성이 좋은 사업주체를 발굴하여 농어촌 지역과 도서 벽지 등 돌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자면 장난감 등 관련 기자재를 보관하고 관리·소독하는 설비와 인원, 감독 관리 체제가 갖추어진 곳이 반드시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육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센터 규모의 기관이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사업위탁체로서의 타당성을 타진해 볼 만하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65개소에 불과하며,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각 시·도에 1개 내지 2개 정도로 개소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즉, 농어촌 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에 1개 소 정도씩 분포하고 있을 뿐으로 영유아 인구 대비 커버해야 할 면적이 넓은 농어촌에서 접근성이 낮은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 연결망을 가지고 151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18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농어촌에서의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에 접근성 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보인다. 이에 이러한 기관 또한 사업주체로서 고려할만 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서 광역시 보다 도 지역에서 설치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유해미·양미선·송신영, 2012: 56).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나 인력 구성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타진해 볼 때,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동식 사업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장난감·도서 대여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육아 정보 제공, 부모 교육, 발달검사, 상담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가구 대상의 돌봄, 육아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로서의 역량은 다른 센터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크게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가족돌봄나눔(아이돌보미, 공도육아나눔터), 지역사회 연계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며, ‘장난감·도서 대여’ 사업 경험은 거의 없다. 단,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소규모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사업주체가 동일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도서 대여 사업 경험과 도서 자료를 공유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위탁체가 될 경우에 사업 취지에 맞는 ‘인력의 전문성’과 그로인한 사업 활성화에서의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 ‘이동식 놀이교실’의 주요 사업 내용은 놀잇감, 도서 등의 대여 사업 뿐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 ‘보육전문요원’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었다. 그러나 그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이나 도서대여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수행하지는 않았고, 영유아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서비스보다는 포괄적인 가족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즉,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나 영유아 가족 대상의 특화된 전문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 기관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현재 해당 기관의 인력 외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의 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시 경력 인정이 될 수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채용되었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인력 채용에 있어 구인이 어려운 불리한 점이 될 수 있어 보육교사 경력 인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업 경험이나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타당성 외 농촌형 건강가정지원센터 5군데⁹⁾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와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충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가는 도서·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는 있을 것으로

9) 충청, 경상, 전라 지역 5군데 농촌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망하였고, 사업 추진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무엇보다 신규 인력이 채용되어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난감이나 도서를 보관할 공간의 여부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나 위탁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동일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동일한 위탁 체가 함께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이용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도서관이나 도서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운영 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도서 대여 사업과 연계하면 공간문제나 사업 경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사업 역량을 중심으로 위탁사업체의 다양화 가능성을 탐진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업주체로서 유사 사업 경험이나 공간, 인력 부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농어촌 지역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사업 활성화에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어, 사업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단, 건강가정지원 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개소수가 많은 대신 조직이 작고 공간도 부족한 편이어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을 좀 더 소규모로 인근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즉, 조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작기 때문에 한 센터의 관할 지역을 다소 좁게 설정하고 다수의 센터에 위탁하여 작은 규모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자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놀잇감, 도서를 갖추고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된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의 위탁체가 될 경우 필요한 지원은 무엇보다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에 대한 지원이란 ‘인건비’와 인력의 ‘경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우선, 이 사업을 담당할 신규 인력의 채용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이 도서·장난감 대여 외에 육아 상담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육아서비스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중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전화 조사에서도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인력 외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지원 예산에는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 경력이 전문 인력의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면 보육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의 근무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 사업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운영 인프라 및 관리체계,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운영 인프라 및 관리 체계

우선 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올해 시범 선정된 운영모델별 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시설 활용형이 5개소, 지역농협과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이 1개소, 농협 추진형이 2개소, 방과후 활동 시설 활용형이 1개소이다. 어린이집 시설 활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아 유휴공간을 돌봄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유아를 돌보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⁰⁾.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 설치 기준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춰져 있으나 그 외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방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유아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안전대비시설의 구비 등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두 번째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이 같은 돌봄 시설에 대한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확

10) 경북 산동농협 산북지점의 경우 회의실로 쓰던 지점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리시설, 놀이방, 유아용 화장실을 갖춤(영남일보, 2014.7.9.).

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보육 대상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만 3세 ~ 만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연령의 유아들이 영아 또는 초등학생인 형제자매와 함께 돌봄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방 시설장이 이를 고려하여 함께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돌봄의 대상인 유아도 함께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번기 주말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대상 연령을 넓혀 영아 또는 초등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운영기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주말 돌봄방 운영기간은 6 월~11월 기간 중 4개월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농번기인 5월초에서 10월말 기간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4개월 이내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실제 계획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사업 시작이 늦게 시작되었다. 전문가와 여러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 대체적으로 16주 정도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농업 형태에 따라 농번기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5월~10월이 농번기일 수 있으나 어떤 지역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처럼 1년 중 특정 기간을 정해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적 농업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시설장과 돌보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시설장과 돌봄 인력의 역량에 따라 단순 돌봄차원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여 농촌 마을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 또는 양육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 단순 유아 돌봄 형태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특수 프로그램 교육 및 문화적 지원 등으로 사업을 특성화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주말 돌봄방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거나 인근 지역의 자격 있는 주민 및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관련 학생들을 유아교육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돌보미의 수가 적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출퇴근 거리나 안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농번기 주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도 이 사업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김은설 외, 2010)에서도 제안했듯이,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을 위해 유아 대상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내에 육아경험이 있는 지원인력들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V. 농촌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본 장에서는 농촌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보육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검토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이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적용

가. 사업개요 및 근거법령

보건복지부의 중앙부처 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¹¹⁾은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서 2006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7).

이 사업은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를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용 비용으로 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만큼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황에 근거해(보건복지부, 2011b: 58) 추진되고 있다.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¹²⁾'이다. 이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¹³⁾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11) 최초 도입 당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명칭 변경됨

12) 2011년 8월 공포, 2012. 2.5 시행

13)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시행중 (www.mw.go.kr에서 인출)

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돋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하여 2006년 당시 최저생계비 130% 이하 둘째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6년 6월 출생순위 기준은 삭제되고 소득기준만을 두게 된 후 소득 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었다. 2008년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사업 지원 대상이 완화된 후 2014년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8).

단,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대상자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해 “다”형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4d: 13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털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4d: 132).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를 지급하며, 이 이용권으로 단태아인 경우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4주(24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방문시 제공받을 수 있는 표준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 표 V-1-1〉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표준서비스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영양관리(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 요청사항 처리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1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이 사업은 지자체별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공급자간 경쟁을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가격의 규제를 완화하여 제공인력의 전문성,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범위($\pm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26).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본인부담금을 세분화하여 정부지원금 규모를 차등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40).

즉,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가격과 소득계층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차액만큼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다음 <표 V-1-2>와 같다.

<표 V-1-2>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서비스 가격 (A+B+C)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50%초과 (예외지원)	A-다형	566,000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2주(12일)
		40~%초과 ~50% 이하	A-가형			
		40% 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 원	50%초과 (예외지원)	B-다형	1,120,000원	상동	3주(18일)
		40~%초과 ~50% 이하	B-가형			
		40% 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인 산모	최대 2,158,000 원	50%초과 (예외지원)	C-다형	1,704,000원	상동	4주(24일)
		40~%초과 ~50% 이하	C-가형			
		40% 이하	C-나형	1,751,000원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인출

향후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 일부의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시장 서비스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4d: 129).

다. 사업 현황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지침이 확정된 후 2006년 당시 12,964명에게 지원(예산 38억)되었고, 2007년 지원 대상 3만7천명(예산 151억)으로 293.7% 증가한 이후 지원대상과 예산액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06; 2007; 2009; 2012; 2014b, 2014c).

2015년에는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전국가구율평균소득 50%에서 65%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르면 예산액은 2014년 대비 약 233억, 지원대상자 수는 2014년 대비 약 2만 4천여명이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표 V-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예산 규모 및 지원액 추이

단위: 명, 백만원

	2006	2007	2009	2012	2014	2015(안)
지원 대상	12,964	37,000	58,698	65,000	64,656	88,071
예산액	3,831	15,082	25,776	28,312	27,289	36,100

2013년 한 해 전국 출생아 수는 총 43만 6,45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통계청, 2014: 32), 2013년 2월~201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군구별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8,569명이 이 사업을 이용하였으며 군(읍면) 지역 이용자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지역의 군 지역을 통틀어 4,758명으로 전국 이용자의 8.1%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c). 2013년 전체 출생아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용률은 약 13.2%이며, 2013년 전체 출생아 중 약 6.4%를 차지하는 읍면(군) 지역의 출생아 총 2만 8,079명 중에서는 4,758명이 이용하여 읍면지역의 이용률은 16.9%로 전체 사업 이용률보다 약 3.7%p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V-1-4 참조). 즉, 2013년 읍면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 6가구 중 1가구 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이용자 중 읍면 지역의 이용자 수는 8% 정도로 비중이 작지만, 읍면지역의 출생건수에 대비하면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이용률이 높다.

〈표 V-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지역별 이용 현황(2013)

단위: 명, %

지역	출생아수 (A)	출생아 비율	이용자수 (B)	이용자 비율	출생아 대비 이용자 비율(B/A)
전국	436,455	100.0	58,569	100.0	13.4
읍면 ^주	경기	1,426	0.32	224	0.38
	강원	2,742	0.63	474	0.81
	충북	4,473	1.02	825	1.41
	충남	2,621	0.60	517	0.88
	경북	3,610	0.83	705	1.20
	경남	2,887	0.66	402	0.68
	전북	2,297	0.53	451	0.77
	전남	8,023	1.83	1161	1.98
	계(읍면)	28,079	6.4	4,758	8.11

주: '읍면'은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의 군 지역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c). '13년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시군구별 이용자 현황(재구성). 내부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4. 8.26). 2013년도 출생 통계(확정) 재구성.

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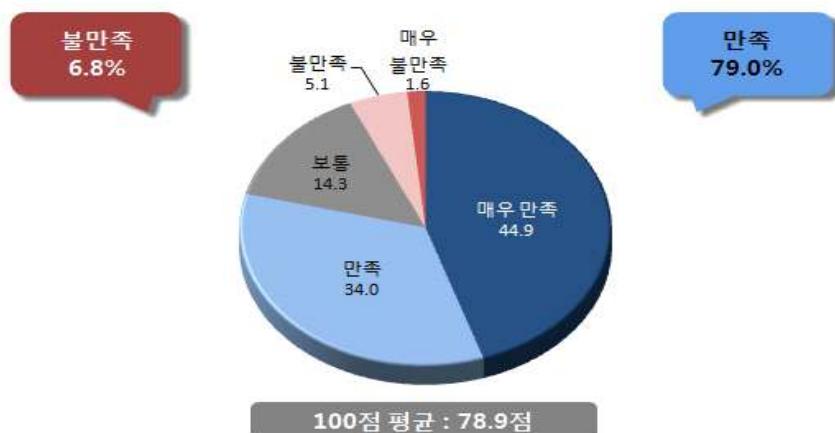
2010년 당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었던 본 사업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5점으로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소영, 2010: 56).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및 강원, 전남 등에서 만족도가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2013년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3b)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14.3%, '불만족한다'는 경우는 6.8%로 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만족도는 '광주/전라' 권역의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필요시(출산시) 다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경우가 80.4%로 높았는데, 재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는 13.0%에 해당하였는데, 재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는 '제공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56.7%가 이를 응답하였다.

이처럼 제공인력에 대한 불만이 서비스 재이용 의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였는데, 제공인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25.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22.8%)’, ‘40~50대 절은 층 도우미 필요(16.2%),’ 서비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유(12.6%)’이 응답되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3b). 13년 이용자만족도(산모신생아). 내부자료.

[그림 V-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13년)

전반적으로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면에서는 향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역시 13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보건복지부, 2013b) ‘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26.8%, ‘매우 불충분’ 1.5%로 전체적으로 28.3%가 현재 단태아 기준 2주(월~토 12일)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간은 7~12일간으로 약 88.4%가 이에 해당하였고 8.3%만이 13일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기준 12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산후신생아 건강관리사 외에 주변인들의 추가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구에서는 산후관리와 신생아 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일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용기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일로는 ‘19~24일’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43.1%).

마. 도서 벽지 지역 지원

한편, 2013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도서 벽지 지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파견되는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도서 벽지 지역 교통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154).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여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대상자의 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4천원, 10km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d: 154).

한편, 도서·벽지나 해당지역 및 인근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할 수 있는 '지정 제공인력'제가 인정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14d: 156)¹⁵⁾, 이러한 지정 제공인력을 활용하거나 제공인력이 동일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보건복지부, 2014d: 154).

바. 농촌 지역 적용 시 개선 필요 사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외지원대상자를 두고 '분만취약지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등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도서·벽지 등 산후관리 서비스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 교통비 등을 지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산후관리가 어려운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수요자 호응도는 높고 주로 지역민을 서비스제공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쪽에서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 출산 감소 경향이 사업 확대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보인다. 2006년 사업 최초 도입 당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6~7년이 경과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용 현황을 보면¹⁶⁾, 읍면지역의 출생률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 비해 출생아 수 대비 이용률은 높아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서의 수요와 필요도

15) 지정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가족은 불인정하며, 위반 시 환수 조치함.(보건복지부, 2014d: 156).

16) <표 V-1-4> 참조.

는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도서 벽지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교통비 지원 수준이 낮아 공급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¹⁷⁾.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시군구별 이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이용자의 약 92%가량은 광역시나 도의 중소도시 이용자이며 읍면지역에서의 이용자는 전체 8%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출생아 수가 전국 출생아 수의 6.4%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용자 비율은 오히려 이 사업이 농어촌에서 더욱 수요가 높고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 사업을 현 상태에서 확대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출생건수가 전국 대비 낮다는 것으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적어 수요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제한을 농촌 지역에서라도 풀어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특별히 분만취약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농촌 읍면지역의 산모는 누구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소득계층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임산부, 산모, 영유아 관련 돌봄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보다 수요의 불안정성이다. 이러한 수요의 불안정성은 공급 또한 불안정하게 만들어, 농촌지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대상이 부족하여 자격증 취득의 유인기가 없어지므로 결국 서비스 공급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소된 서비스 공급은 다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를 방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농촌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어도 농촌의 산모와 신생아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계층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서비스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공급의 안정화와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행 단태아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로 되어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기간을 단

17) 도청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임.

태아는 3주, 쌍생아는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요 고저에 따라 공급이 좌우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사의 종사상 지위를 보건소 등에 소속되도록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활동 지역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¹⁸⁾」 : 맞춤형 아이돌보미 양성

가. 사업개요 및 내용

1) 개요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¹⁹⁾에 근거를 두고 한부모,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사업은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²⁰⁾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²¹⁾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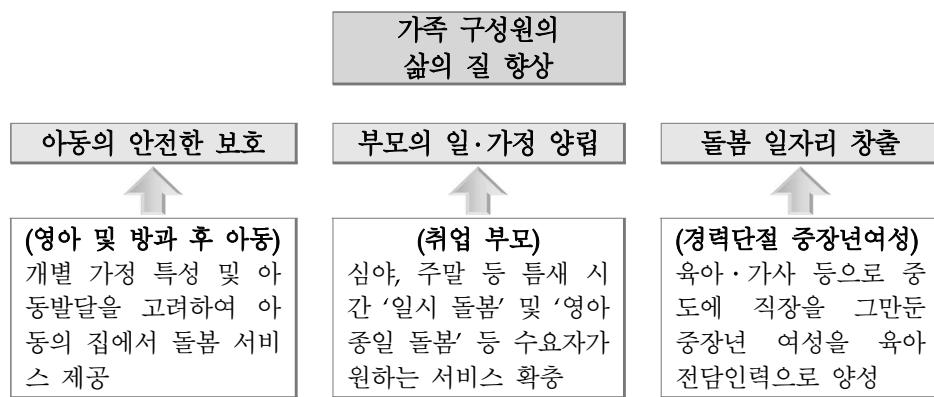
18) 여성가족부(2014a).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자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소개(<http://www.familynet.or.kr/main/index.do>)를 중심으로 정리 요약함.

19)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 8.6% ('09년 보육실태조사)

21) 0세아는 75.2%, 1세아 73.6%, 2세아 60.6%가 조부모·친인척·비혈연 등 가정 내 양육지원 선호('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자료.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p.7.

[그림 V-2-1] 아이돌봄 사업 개요

2) 사업내용

아이돌봄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특별 서비스(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이용대상과 시간은 다음 <표 V-2-1>와 같다

<표 V-2-1> 아이돌봄 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 돌봄서비스 (일반형)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가·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아이돌봄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합형 돌봄서비스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월 120~240 (가·나형 : 240, 다·라형 : 200) 시간 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영아종일제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 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지원
기간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존재 - 만 0세~2세 : 3명/- 만3세~12세 : 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 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 50% 정부지원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 전을 제출(미제출 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염병에 한함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babycare/babycare1.do>.

201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다양화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 및 학교, 학원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 교사형 돌봄서비스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표준보 육과정과 연계한 영아 표준돌봄프로그램에 따라 0~1세아 대상 맞춤형 보육프로 그램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밖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 봄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병원 이용 동 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다.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정 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여 이용하고, 정부미지원 가구는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아이돌봄 사업의 시간제돌봄서비스와 종합형 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2014년 3월 기준)은 다음 <표 V-2-2>와 같다.

<표 V-2-2>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아동 1인 돌봄서비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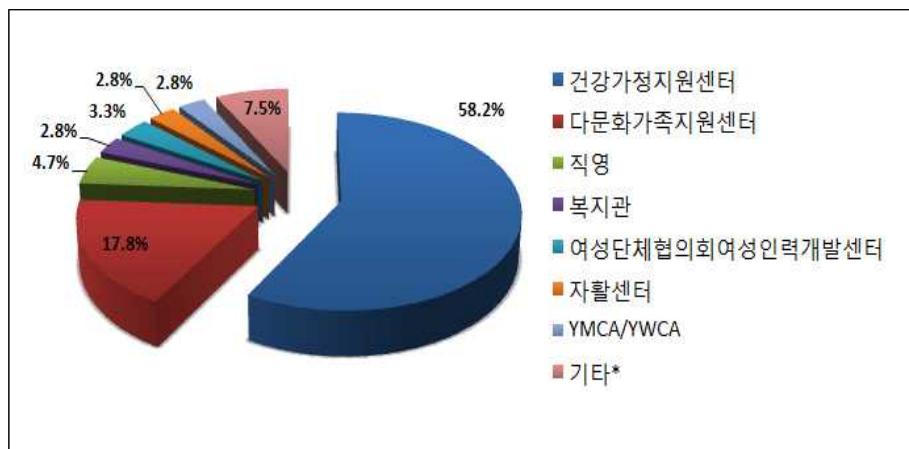
유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	시간제 돌봄(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4,250원	1,250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라형	100% 초과	-	5,500원

- 주. 1)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이용요금은 소득수준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 3)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1천원 할증)
- 4)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 시 3,000원씩 이용단가 증가
- 5)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할증요금을 부담

나. 사업운영 및 이용 현황

2014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지원하는 광역 거점기관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 기관씩 위탁 운영되고 있다. 13개 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여성비전센터, 강원도는 원주 YMCA,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 거점기관의 주요 업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참여,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아이돌봄 홍보, 돌보미 현황 파악 및 사업 실적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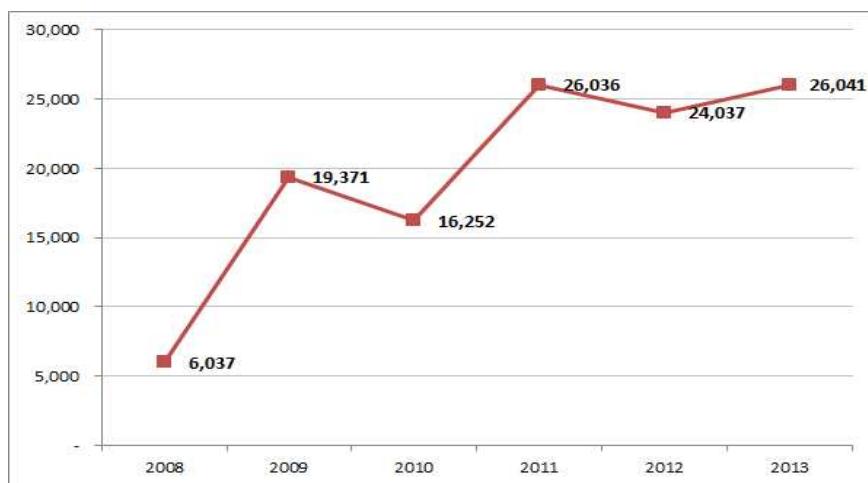
201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하여 213개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참조 [그림 V-2-2]),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체의 5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8%, 지자체 직접 운영 4.7% 순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 업무는 정부지원 미대상자의 경우 신청·접수 처리, 돌보미 모집·심사, 면접, 돌보미 연계, 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 및 돌보미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p.9. 재구성.
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새마을회, 산학협력단 등.

[그림 V-2-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유형(2014년)

아이돌봄 사업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여 이용하는 ‘신규 서비스 이용가구’는 26,041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유입이 이루어졌다.



자료.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p.25. 재구성.

[그림 V-2-3] 아이돌봄서비스 연도별 신규 서비스 이용 가구 수(2008~2013)

다. 농촌 적용 시 개선 필요 사항

아이돌보미는 보육교사를 채용하기가 힘든 농촌의 보육 여건 상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인력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시범 진행하고 있는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에서는 주 보육서비스제공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어린이집의 보조 인력으로 일할 수도 있고, 본 보고서가 앞 장에서 제안한 '가정보육센터' 모델의 경우도 아이돌보미 자격자가 센터 보육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자를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의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고 있고 기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이므로 시간당 1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지역에 따라서 아이돌보미 자격자 수급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아이돌보미는 8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을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해마다 20시간씩의 시·도가 지정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도록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 자격자가 농어촌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수당을 주어 일자리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혹은 그 지역 출신의 아이돌보미를 특화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이 산간·벽지이거나 도서지역이라면 전자의 방법은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 있고 후자는 지역민 양성에 여러 가지 걸림돌 있다. 만일 적정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주 교육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로 중소도시 이상 지역에 위치하므로 10일 이상 해당 농촌을 떠나 양성 기관이 이는 대처(大處)에 통근 또는 체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농촌 보육이 가진 인력의 부족을 채우고 한편으로는 농촌여성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농촌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교육 기회 제공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말을 이용하여 인근 교육 수요자가 3명 이상이 모여질 경우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출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전개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3. 농촌으로 들어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²²⁾」

가. 사업개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그림 V-3-1 참조)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자료. 여성가족부(2014b). '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 p.1.

[그림 V-3-1]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개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2010년 5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 23개 지역 센터로 확대되어 시범 운영 되었다. 2014년 8월 기준, 전국 35개 지역 78개소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수행 시도 및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정부지원사업수행기관 26개소,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4개소, 군관사지역 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해당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22) 여성가족부(2014b). '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소개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1.do>)를 중심으로 정리·요약함. 2013년까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14년 들어 사업명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변경

를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단위의 사업 수행기관은 경기도 여주군과 경상남도 하동군 뿐이고 나머지 기관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표 V-3-1〉 20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수행 시도 및 기관(2014년 7월 기준)

시·도명	정부지원사업수행기관	정부지원 외 수행기관	군관사지역
서울(5)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2)	수성구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4)	부평구	동구*,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백령도공군309관제대대*
광주(1)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1)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3)	고양시, 시흥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5)	동해시*	철원15사단*, 화천7사단*, 고성22사단*, 인제12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2)	청주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2)	천안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2)	의산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1)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1)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2)	통영시*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총(35)	26개소	4개소	5개소

주. *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진행한 지역임.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1.do>).

나. 사업내용 및 이용 현황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내용은 아래 <표 V-3-2>과 같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취학 전·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 할 수 있다. 기본운영 시간은 월~금 09:00~18:00이며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표 V-3-2>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여건에 따라 평일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 ○ 이용요금 : 무료이용 ○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최초 1회) - 이용 시마다 방문대장 작성 또는 회원카드 제시(바코드 입력 등)후 이용
<input type="checkbox"/> 주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 자녀돌봄 품앗이²³⁾ 활동 연계 및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4b). '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 p.1.5.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하고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 장난감 등 자녀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하며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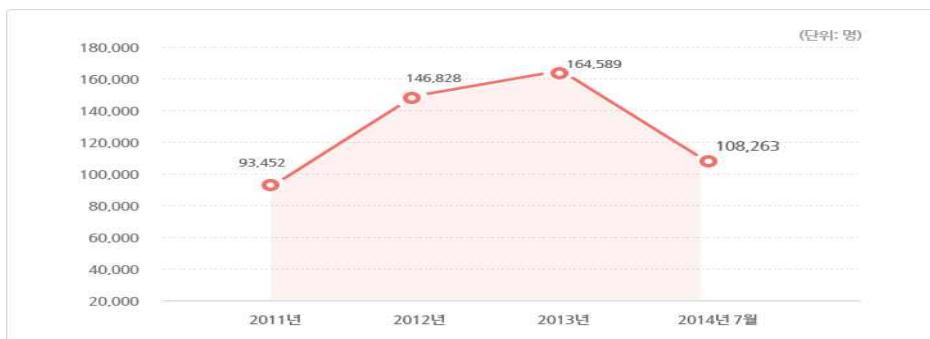
23) [가족품앗이]

- (개념)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돋는 그룹 활동
- (형태) 그룹별로 매일, 주1~2회, 월1~2회 등 다양하게 진행
- (내용)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학교 안심동행, 미술 등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환경 구성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역이나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되 50m²(15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장난감 및 도서의 비치와 대여를 위한 사물함을 설치하고 놀이 공간, 독서 공간, 조리대, 담소 장소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들의 놀이, 낮잠을 위해 바닥 난방시설을 구비하고 연령이 큰아이부터 수·이유기 영아가 함께 이용하는 혼합공간이므로 수유와 기저귀 갈기 공간을 커튼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2011년 이후 공동육아나눔터의 연간 참여 인원 현황은 다음 [그림 V-3-2]과 같다. 2011년 93,452명에서 2012년 146,828명으로 전년대비 약 57% 증가하였고 2014년 7월 기준 108,263명으로 2013년 대비 50%가 넘어서 연간 이용 현황이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2013년 이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여성가족부는 민간기업 협력·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왔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8.28). 대표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전방지역 군부대 관사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8.28.).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2.do>).

[그림 V-3-2] 공동육아나눔터 연간 참여 인원 현황

다. 농촌 적용 시 개선 필요 사항

공동육아나눔터는 농촌 영유아 양육 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 부모 상호간 정보교환과 양육 지원, 육아 품앗이를 나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농촌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동육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를 통한 프로그램과 교육, 장난감·교재교구 활용 등을 제공한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센터)가 농촌에 자리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 주체가 있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을,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센터 혹은 마을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적·물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제로, 이동식놀이교실의 사업진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까지 확대했을 때 사업간 연계가 가능해보인다.

앞서 보았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역시 일부 센터²⁴⁾를 제외하면,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농촌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전방지역 군부대 관사 등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200여개로 확대할 계획으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8.28.) 사업의 확대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외부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유해미 외, 2013). 따라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동식 놀이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면 농촌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농촌 지역의 사례를 보면,

24)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농촌형 센터는 경상남도 하동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센터이긴 하나 기존의 연기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3곳 중 도담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조치원읍과 부강면에 위치하고 있음.

경남 하동군의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주변 지역에서 참여 수요가 있으나 면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장난감 대여 사업에 대해,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난감을 관리할 인력이 있으면 대여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연계가 가능하고 이 사업은 인근 면 지역에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부강면지역의 복지회관에 설치하였고 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지역 내 자원봉사인력으로 두어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진 장난감에 대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상으로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이 센터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농촌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4. 농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본 보고서 pp.18-2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반 편성 특례조항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영유아수가 많지 않은 농촌 어린이집의 운영이 도시 지역에 비해 원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국가가 상황에 따른 시설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농촌 영유아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간담회와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농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필요 요구들을 근거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개선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지원 상향 조정

첫째, 농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손꼽히는 높은 차량

운행비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지역 면적이 넓고 이동 거리가 먼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비되어야 할 기본 사항이다. 현재 농촌소재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연 240만원(월20만원)의 차량운행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 지원이 실제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상향요구가 크다. 이 비용은 처음 지원된 이후 수년 동안 전혀 상승되지 않았고 서문희 등(201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농촌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는 주유비만 100만원이 넘는데 정부는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2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는 약 30%의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거리가 월 평균 2,000km를 넘게 운행하고 11%는 3,000km 이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조사에서 대도시 지역 차량은 10%만이 2,000km 이상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이 거리를 조사한 경우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므로 농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차량운영 지원비가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다.

나. 보육 보조인력 지원

둘째는 보육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바 있으나(pp.74-75), 이는 비단 소규모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요구이다. 사무보조, 차량동승도우미, 교사대체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인력이 부족한 농촌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은 자명하다. 일부 지자체가 보육도우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소수에 불과하므로 국가 보육 제도 차원에서 농어촌 시간제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다. 풍부한 활동 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농촌 지역의 부모들은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환경에 대해 걱정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촌 어린이집

이 보다 풍부한 교육 활동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개발비나 보육교직원 자기계발비 등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이고 그 활용성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은 프로그램개발비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특별활동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자기계발비로써 교사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모든 농촌 어린이집에 이러한 지원이 투입되기 어렵다면 우선 평가인증 점수 등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역별로 선발하여 농촌 어린이집의 교육적 환경이 풍부해지도록 목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문헌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요 사업 소개: 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
김은설·이윤진·최진·조혜주(2010).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 보건
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
개발센터.
- 농민신문(2014년 7월 16일자). '인구의 날'을 통해 들여다본 농촌인구의 변화상.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 5. 22).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 대상지
9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농림축산식품부(2014).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사업 시행안내.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뉴시스뉴스, 2014년 7월 14일자 보도. "충북 일부 지자체 출산·보육 여건 태부족…
출생아 감소 악순환"
-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사업 지침.
-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2014. 2. 28일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년 귀농·귀촌 32,424가구(56,267명)로 사상 최대.
2014. 3. 20일자
- 보건복지부(2009).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1a). 2011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1b). 2011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07~2013).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b). 13년 이용자만족도(산모신생아).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c). '13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시군구별 이용자 현황(재구성).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c).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0.7% 증가한 51.9 조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9.18)
- 보건복지부(2014d).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보건복
서문화·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화·도남희·송신영(201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육아
정책연구소
- 안상수·박성정·문미경(2013).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방안: 여성농업인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2014b). '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계획(안).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8. 28). 아동 이용시설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연합뉴스 2012.9.20.일자 보도.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 '우렁' …농촌 출산율
도시의 2배"
- 이규천·최종환(2008).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2013). -농어촌지역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2013년
결과보고서.
-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2013). 홈페이지내 자료
- 조소영·박영숙·김진현·김상만(20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보건복지부

조주은(201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http://education.go.au/System/files/doc/other/childcarefactsheet13.pdf>에서 2014.7.14. 인출.

<http://www.familynet.or.kr/main/index.do>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지부

통계청(2014). 통계청 보도자료.(2014. 8. 26). “2013년도 출생 통계(확정)”

REAP AOTEAROA NZ(2013). Integrated Investment Report REAP Aotearoa
NZ Performance 2012 Statement of Service Performance. REAPANZ.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호주 교육부 홈페이지(<http://docs.education.gov.au>)

부 록

부록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 2. 농번기주말돌봄방 시범사업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보육서비스 사업 수요 조사 질문

부록 4.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명단

부록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 모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에서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28명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조사 관련 문의처 : 조혜주 연구원 02-398-7715, thgid@kicce.re.kr
 김은설 연구위원 02-398-7716, eskim@kicce.re.kr

※ 귀 어린이집의 간략한 정보를 기록해 주십시오.

지 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1) 원장: <input type="checkbox"/> ①전임 <input type="checkbox"/> ②겸임 2) 교사: 교사1 (연령: 학력: 경력: 거주지: 동일 군내/타 지역 통근) 교사2 (연령: 학력: 경력: 거주지: 동일 군내/타 지역 통근) 교사3 (연령: 학력: 경력: 거주지: 동일 군내/타 지역 통근) 3) 기타 직원: 축사부 <input type="checkbox"/> ①유 <input type="checkbox"/> ②무 (인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전액 <input type="checkbox"/> ②일부) 운전원 <input type="checkbox"/> ①유 <input type="checkbox"/> ②무 (인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전액 <input type="checkbox"/> ②일부)									
	그 외: _____									
	영유아 현황	정원	()명		반 구성	반 1	반 2	반 3	반 4	반 5
		현원	()명			연령				
	차량 운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운행 함 <input type="checkbox"/> ②운행 않음		차량 운행시	소유 형태	① 소유 ② 지입 ③ 전세 ④ 기타()				
					운전자	① 원장 ② 교사 ③ 운전기사 ④ 기타()				
동승자					① 원장 ② 교사 ③ 전담인력 ④ 기타() ⑤ 없음					

I. 시설 현황

- ## 1. 귀 어린이집의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될니까?

- ① 단독건물 ② 공공건물의 일부 (건물종류: _____ 예시: 보건소, 마을회관, 노인회관)
③ 기타()

2. 귀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총수는 몇 층입니까? 해당되는 층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반)지하 ② 1층 ③ 2층
 ④ 3층 ⑤ 4층 이상 ⑥ 5층 이상

3. 귀 어린이집의 건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4. 귀 어린이집이 구비하고 있는 공간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하고 있는 실 종류에 V하고 한 개 실 이상을 갖추고 있을 때 ()에 실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실외놀이터 ( 6-1번 문항으로) ② 실내놀이터
 ③ 중간옥상 등 옥내중간놀이터 ④ 옥상놀이터
 ⑤ 인근놀이터 ⑥ 초등학교와 공동사용 ⑦ 기타

II. 운영 현황

1. 귀 어린이집의 운영 요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월요일 ~ 금요일 ② 월요일 ~ 매주 토요일 ③ 월요일 ~ 격주 토요일
 ④ 월요일 ~ 매주 일요일 ⑤ 월요일 ~ 격주 일요일 ⑥ 기타

2. 귀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일상적인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세요)

2-1. 일과 시작 시간: 오전 시 분

2-2. 일과 종료 시간: 오전()/오후() 시 분

2-3. 연장보육 종료 시각: 오전()/오후() 시 분 ※ 연장보육 운영하지 않음

2-4. 휴일보육 운영 시간: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 휴일보육 운영하지 않음

* 휴일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 보육을 의미합니다.

3. 귀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III. 개선 의견

1.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 충족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② 원아 모집으로 인한 인근 유치원과의 갈등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③ 주변 읍면 소재 타 어린이집과의 갈등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④ 지역 주민과의 갈등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⑤ 교사 채용의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⑥ 취사부 등 기타 인력 채용의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있음 (특히 누구: _____)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⑦ 운영비의 부족 |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족 항목: _____)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⑧ 시설설비의 불충분 | <input type="checkbox"/> 있음 (특히 무엇: _____)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⑨ 차량운영의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⑩ 특별활동 운영의 어려움 | <input type="checkbox"/> 있음 (어려운 부분: _____)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⑪ 기타 () | | |

2.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느 분야의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1순위____ 2순위____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환경개선비 | ② 교재교구·기자재 구입비 |
| ③ 교사인건비 | ④ 교사 외 직원인건비 |
| ⑤ 급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용 | ⑥ 프로그램 운영비(현장학습비 등) |
| ⑦ 원장인건비 | ⑧ 없음 |
| ⑨ 기타 () | |

3. 귀 어린이집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음의 항목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그리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
|-------------------------|----------------------|
| 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월 10만원 | ② 보육교사 교통비 월 10만원 |
| ③ 교재교구비 연 2회 최대 100만원/회 | ④ 프로그램개발비 최대 연 210만원 |
| ⑤ 냉·난방비 월 20만원 연 6개월 | |

- 가장 만족스러운 항목 () 이유: _____
 -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 () 이유: _____

4.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5. 농촌은 아동 인구수가 매우 적지만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보이는 지역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가로서, 농촌 보육의 문제점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고 보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
-

IV. 원장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 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고졸 | ②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 ③ 대학교(4년제) 졸업 |
| ④ 대학원 석사 졸업 | ⑤ 대학원 박사 졸업 | |

3. 귀하의 교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어린이집 교사 경력(원감 포함) | 총 () 년 () 개월 |
| ② 어린이집 원장 경력 | 총 () 년 () 개월 |
| ③ 유치원 교사(원장 포함) 경력 | 총 () 년 () 개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운영 실태 조사 설문지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사업 운영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 모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에서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9명의 시설장님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향후 전망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조사 관련 문의처 : 조혜주 연구원 02-398-7715, thgid@kicce.re.kr

※ 귀 어린이집의 간략한 정보를 기록해 주십시오.

지 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시설명 운영주체						
종사자 현황	1) 시설장: <input type="checkbox"/> ①유 <input type="checkbox"/> ②무								
	2) 돌보미 총 _____ 명								
	돌보미 1 (연령: _____)		학력: _____		경력: _____				
	월평균 급여: _____		1일 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분)						
	돌보미 2 (연령: _____)		학력: _____		경력: _____				
	월평균 급여: _____		1일 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분)						
	돌보미 3: (연령: _____)		학력: _____		경력: _____				
	월평균 급여: _____		1일 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분)						
	3) 기타 직원:								
취사부 <input type="checkbox"/> ①유(연령: _____)		학력: _____		경력: _____		1일 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분)			
<input type="checkbox"/> ②무		월평균 급여: _____							
보조인력 <input type="checkbox"/> ①유(연령: _____)		학력: _____		경력: _____		1일 근무시간: _____ 시간 _____ 분)			
<input type="checkbox"/> ②무		월평균 급여: _____							
그 외: _____									
영유아 현황	총 현원	()명	연령별 현황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기타
					아동 수				
이용 가구	농업인 가구			()가구					

I. 시설 및 운영 현황

1. 귀 시설의 입주 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건물 사용 ② 건물의 일부 (건물종류: _____ 예시: 보건소, 마을회관, 노인회관)
③ 지역 내 어린이집을 주말만 사용 ④ 기타(_____)

2. 운영체(농협 등) 귀 시설의 운영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2. 귀 시설의 올해(2014년)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개시()월 부터 사업 종료 ()월 까지(예정 포함)

2-1. 쿠 시설 소재지의 농법기를 고려할 때 주말들을 봄 운영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월부터 ()까지

3. 귀 시설의 운영 요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매주 토요일 ② 매주 일요일 ③ 매주 토, 일

4. 귀 시설의 운영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4-1. 일과 시작 시간: 오전()/오후() 시 분

4-2. 일과 종료 시간: 오전()/오후() 시 분

4-1. 이용 주민의 이용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 ① 있다(☞문 4-1-1) ② 없다

4-1-1. 이용 시간 연장을 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추가 시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 ② 운영비 부담 증가(급식비, 임대료 증가 등)
 ③ 프로그램의 부족 ④ 기타: _____

II.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5. 귀 시설에서 올해 주말돌봄방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표기 해 주십시오.

- | | |
|--|---|
| ① 지역 수요 부족(이용 아동 모집의 어려움)
② 운영 인력 채용의 어려움
③ 지역 내 기타 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의 갈등
④ 지역 주민의 호응 부족
⑤ 운영비 부족
⑥ 시설설비의 불충분
⑦ 프로그램 부족
⑧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특히 누구: _____)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족 항목: _____)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부족 설비: _____)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5-1. 현재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5-2. 다양한 항목의 운영 현황을 고려한 현재 전반적인 운영상 어려움은 어떠합니까?

- | | |
|---------------------------------------|-----------------------|
| ① 매우 어려움
③ 보통임
⑤ 운영상 어려움이 거의 없음 | ② 어려운 편
④ 어렵지 않은 편 |
|---------------------------------------|-----------------------|

6. 귀 시설의 주말돌봄방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 | | |
|--|----------------------|
| ①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됨(☞문 6-1로)
③ 지역내 아동 인구 감소 등 수요 감소가 예상됨 | ② 현상태 유지 정도의 수요가 예상됨 |
|--|----------------------|

6-1. 귀 시설의 소재지역 인근의 지역으로 주말돌봄방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그러함 | ② 그렇지 않음. |
|-------|-----------|

7. 귀하께서는 2015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① 그렇다(☞문 7-1로) | ② 아니다 |
|----------------|-------|

7-1. 향후 본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III. 시설장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 세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②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졸업
④ 대학원 졸업

3.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어린이집 · 유치원 등 교사 경력(원감 포함) 총 () 년 () 개월
② 어린이집 · 유치원 원장 경력 총 () 년 () 개월
③ 기타 경력 총 () 년 () 개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보육서비스 수요 조사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보육서비스 사업 수요 조사

- 농촌 보육 전화 수요 조사
- 대상: 20개 군 보육담당 공무원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입니다.

- 1) 담당 업무 맡은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로 2013년 개칭)에 대해 아십니까?
- 3) △△도 OO시 OO면 등은 지리상 인근에 읍이 없고 어린이집이 없는 면만 주변에 있는 지역이면서 2~4세 아동의 인구는 주민등록상 20명 이상 발견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3-1) (만일 ‘아이가 없다’고 응답한다면) -> 주민등록인구상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만일 ‘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다면) -> 현재 농어촌소규모 어린이집은 지방비 30%만 내면 농림부에서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도 어려운 상황인지요? 그렇다면, 국고 100%를 지원한다면 어떻게습니까?
- 4) 기타 보육수요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4-1) 농번기에만 주말 돌봄방을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처럼 보육시설 없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의 수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2) 귀 지역에서 (설명을 덧붙여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록4.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명단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빈도
		2, 3, 4세 아동 인구수 20명 이상 읍·면 지역	비해당 지역 ¹⁾	
서울특별시	송파		잠실7	1
부산광역시	중 영도 금정 강서		동광, 광복, 남포 남항 선두구 천가	6
대구광역시	달성	유가		1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내가, 송해 덕적	양사, 서도	5
광주광역시	북 광산		석곡, 양산 임곡, 삼도	4
대전광역시	동 중 유성		대청 대사 원신흥	3
울산광역시	북 울주	두동, 두서, 삼북	강동 삼동	5
세종특별자치시			전동	1
경기도	평택 고양 구리 시흥 파주 안성 광주 연천	서탄 고삼 중부 미산	장항1 갈매 과림 군내, 장단, 진동, 진서 중, 장남	13
강원도	춘천 강릉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고성 양양	화촌, 내촌, 서 김삿갓, 북 근남 서, 현북	남, 북산, 조운 왕산 노곡, 가곡, 신기 두촌 갑천 상동, 남, 수주 근북, 근동, 원동, 원남, 임남 수동	26
충청북도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살미, 소태 속리산, 탄부, 수한 동이, 청성, 군서, 군북 상촌, 양산 감물, 칠성, 문광 가곡	청풍, 한수 장안, 회남, 내북, 산외 안남, 안내 매곡, 용화 장연, 소수 적성, 단성	29
충청남도	천안 보령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주포, 주산, 미산 대호지, 면천 내산, 구룡, 초촌 화양, 기산, 종천 운곡, 대치, 목, 장평 장곡, 은하, 서부 광시, 응봉, 봉산	수신, 동, 불당 옥산, 충화, 양화 마산, 시초, 문산 대홍	34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빈도
		2, 3, 4세 아동 인구수 20명 이상 읍·면 지역	비해당 지역 ¹⁾	
전라북도	태안	남, 근흥	이원	63
	군산	나포		
	익산	성당, 낭산, 망성, 용동	옹포	
	정읍	소성, 덕천, 이평, 감곡, 산내	영원, 초산	
	남원	주천, 수지, 사매, 보절	대강, 덕과	
	김제	백산, 부량, 공덕, 청하, 진봉, 봉남, 황산, 광활		
	완주	비봉	경천	
	진안	안천, 동향, 백운, 정천, 주천	용담, 상전	
	무주		부남	
	장수	번암, 천천, 계남, 계북		
	임실	청웅, 운암, 신평, 성수, 신덕, 삼계, 강진, 덕치, 지사		
	순창	인계	금괴, 적성	
전라남도	고창	성송, 심원, 성내, 신림, 부안		77
	부안	주산, 동진, 보안, 상서	위도	
	목포		만호	
	여수		심일	
	순천		월등, 송광	
	나주	다도		
	광양	옥룡, 다암		
	담양	봉산, 고서, 대덕, 무정, 금성, 용, 월산	남	
	곡성	오곡, 삼기, 겸	목사동, 고달, 오산	
	구례	간전, 토지, 광의, 용방	문척	
	고흥	점암, 남양	영남, 동일	
	보성	노동, 미려, 겸백, 율어, 문덕	웅치	
	화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북, 동복, 남부산	한천, 도암, 이서	
	장흥		장동, 유치	
경상북도	강진	대구, 신전, 작천, 옴천, 마량		87
	해남	삼산, 현산, 북일, 계곡, 마산		
	영암	서호		
	무안	봉탄	낙월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장성	진원, 동화, 삼서, 서삼, 북일, 북하	금당, 생일	
	완도			
	진도	군내	팔금	
	신안	자은		
	포항		신광, 청하, 죽장, 기북	
	경주		보덕	
	김천	감천, 조마, 구성, 부항, 대덕	증산	
	안동	와룡, 남후, 남선		
	구미	도개	무을, 옥성	
경상남도	영주	문수, 안정, 봉현,	평온, 영주2	87
	영천	화산, 화북, 대창		
	상주	중동, 낙동, 청리, 외남, 내서, 외서, 은척	이안, 화남	
	문경	영순, 산양	점촌4	
	경산	용성, 남산		
	군위	소보	부계, 우보, 산성, 고로	
	의성	단촌, 구천, 단밀, 단북	옥산, 사곡, 가음, 비안, 신평, 안평, 안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빈도
		2, 3, 4세 아동 인구수 20명 이상 읍·면 지역	비해당 지역 ¹⁾	
경상남도	청송	부동, 부남		
	영양	청기, 일월		
	영덕	남정, 병곡	달산, 지품, 창수	
	청도	각남, 각북, 운문, 매전		
	고령	우곡	덕곡, 운수	
	성주	대가	금수	
	칠곡	지천		
	예천	감천, 보문, 개포, 지보	상리	
	봉화	법전, 소천	재산, 상운	
	울진	근남	서	
	울릉	북	서	
	진주	도산, 육지, 한산	사봉, 미천, 충무공	
	통영	축동, 곤명	사량, 중앙	
	사천	상동	청도	
	밀양	동부, 둔덕, 장목	남부	
	거제	원동		
	양산		칠곡, 대의, 정곡, 낙서, 봉수, 궁류, 유곡	
	의령	가례, 화정, 용덕, 지정	여향	
	함안	함안, 법수	성산, 계성, 길곡	
	창녕	이방, 유어, 장마, 도천	삼산, 하일, 상리, 대가, 영현, 개천, 구만, 미암	
	고성	영오	상주	
	남해	서, 고현, 설천	청암	
	하동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차황, 생비량	
	산청	오부, 금서, 삼장	휴천, 유림, 서하, 병곡	
	함양	지곡, 백전	고제, 남하, 가북	
	거창	웅양, 북상, 마리, 남상, 신원	묘산,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합천	봉산, 율곡, 쌍백, 용주		
제주특별자치도			일도1	1
계				441

85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화: 1577-1020, 팩스: 044) 868-0846
인쇄처 한학문학사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02-01